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2월

석사학위논문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적용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신 동 현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적용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dural Provisions Application of
Rules of Origin

2015년 11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신 동 현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적용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석 민

이 논문을 무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신 동 현

신동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전의천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승제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석민 (인)

2015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논문의 구성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법원	8
제1절 원산지제도의 개요	8
1. 원산지 제도의 개념과 기능	8
2. 원산지 규정의 내용과 분류	9
3. 원산지 제도의 국제 법규 및 협약	12
제2절 원산지제도 관련 국내 법체계	15
1. 관세법과 원산지 규정	15
2. 대외무역법과 원산지 규정	16
3. FTA 관세특례법과 원산지 규정	18
4. 그 밖의 원산지 관련 법령	19
제3절 원산지제도의 절차적 규정	20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규정	20
2. 원산지 검증절차 규정	31
3. 원산지 표시 및 확인절차 규정	35
제3장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적용 현황 분석	37
제1절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현황	37
1. 특혜관세 적용대상별 원산지증명	37
2. 주요 국가의 원산지 증명	45
3. 비특혜원산지 증명의 국제적 현황 분석	48

제2절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검증	52
1. 원산지 검증현황 분석	52
2. 협정별 원산지 검증의 특징	55
제3절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및 확인	59
1. 주요 국가의 원산지표시	59
2. 한국의 원산지표시 현황	61
3.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 및 심사	64
제4장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발전방향	67
제1절 쟁송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67
1. 원산지표시 쟁송사례	67
2. 원산지검증 쟁송사례	68
제2절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문제점	72
1. 원산지 절차적 규정의 복잡성 및 준수율 저조	72
2. 비특혜원산지의 통관단계 확인 저조	76
3. 특혜원산지 규정과의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필요	79
제3절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발전방향	83
1. 원산지표시 방법의 다양성 수용과 규정 정비	83
2.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및 관련 규정 정비	85
3. 비특혜관세 대상물품 원산지 증명 및 확인 강화	87
4. FTA의 절차규정 표준화로 해석에 따른 갈등 해소	89
제5장 결 론	91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91
제2절 연구의 한계와 발전과제	93
《참고문헌》	94

【표 목 차】

<표 2-1> 원산지 규정의 분류	11
<표 2-2> 통일원산지 규정 구조	14
<표 2-3> 관세법의 원산지 관련 규정 체계	15
<표 2-4>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관련 규정 체계	17
<표 2-5> FTA 관세특례법의 원산지 관련 규정 체계	18
<표 2-6> FTA 등 특혜관세 대상물품 통관 현황	21
<표 2-7> 특혜관세와 원산지 증명 대상	22
<표 2-8> 비특혜관세와 원산지 증명 대상	24
<표 2-9> 원산지 증명 관련 관세법령	26
<표 2-10> 원산지 증명 관련 대외무역법령	26
<표 2-11>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27
<표 2-12> 원산지증명서 양식 운영비교	28
<표 2-13> FTA 체결국별 원산지검증 방식	32
<표 2-14> 원산지 검증 절차	33
<표 2-15> 원산지검증 대상과 검증내용	34
<표 2-16> 관세법령의 원산지표시 규정	35
<표 2-17>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표시 규정	36
<표 3-1>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38
<표 3-2> FTA 별 원산지증명 방식	39
<표 3-3> FTA 별 원산지증명서 서식	40
<표 3-4> 관세법 제76조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대상 최빈개발도상국	41
<표 3-5> TNDC에 의한 양허세율 적용국가	42
<표 3-6> GSTP에 의한 양허세율 적용국가	43
<표 3-7> 우리나라 수출품의 GSP 적용대상	44
<표 3-8> 10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행국가 현황	48
<표 3-9> 원산지증명서 발행 기관(2013년 기준)	49
<표 3-10> 협정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한국의 원산지검증 실시 현황	52

<표 3-11> 수출물품에 대한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 54
 <표 3-12> 원산지검증 입증책임과 추정가능 여부 58
 <표 3-13>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표시 단속실적(단계별) 62
 <표 3-14>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단속 적발실적 63
 <표 3-15> 2013~2014년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63
 <표 3-16> 제3국 송장 비인정 사례 65
 <표 3-17> 송품장 신고방식의 문안 작성 요령 66
 <표 3-18>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 기재 항목 66
 <표 4-1> 주요 국가의 수입과세 관세율 FTA 발효 전·후 비교 68
 <표 4-2>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결과 적발된 원산지 규정 위반 사유 72
 <표 4-3> 협정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검증 결과 적발된 위반 사유 74
 <표 4-4> PTA 및 GSP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검증 결과 적발된 위반 사유 75
 <표 4-5> 한·미FTA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표시 기준 80
 <표 4-6> FTA 특례법령상 서류보관 의무 등 87

【그림 목차】

<그림 1> 다국적 거래의 인증수출자 위반 유형도 56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dural Provisions Application of Rules of Origin

Sink, Dong-Hyun

Advisor : Prof. Kim, Seog-Min, Ph.D.

Department of FTA Busines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From the standpoint of affirming the trend of the unification of origin rules, while minimizing reference to such matters concerning origin determination as the basic principles of origin and the standards of origin determination, the study focuses its review on procedural rules of the institution of origin such as origin verification, origin confirmation by customs bodies, and country-of-origin marking system.

First of all, by collecting and examining literature of the field and by reviewing the resources of academic studies from specialty societies, the study goes through the forms of existence of the institution ranging from related international norms to domestic statutes, and then reviews procedural practices of the institution that is currently applied to such procedures of export/import clearance as the issuance and the management of certificates of origin, the afterward validation of certificates of origin, and origin marking.

Next, the study points out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incurred by non-compliance of formal procedur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well as its institutional flaws through an analysis of some cases of disclosing non-compliance in origin validation, some cases of dispute arisen from such instances as levying anti-dumping duty, and present situation of origin

marking enforcement.

Finally, by looking into some cases of legal dispute, the study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the compliance with procedural rules of origin institution and suggests some directions in policy development such as the tolerance of diversity in origin marking and both ways of managing the certification of origin of goods being exported and of improving i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12일 호주에 이어 2015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와 FTA를 발효함에 따라 현재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미국 등 11개 협정, 49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 중이다. 또한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도 2015년 2월 실질적인 협상 타결에 이른 가서명을 함으로서 머지않은 시일 내에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EU 및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역사상 세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전 세계 GDP의 약 73.5%가 우리의 FTA 경제영토로 편입되었다. 이는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타결된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의 FTA 협정이 예정대로 발효된다면 우리나라와 FTA 상대국과의 교역비중은 전체 교역의 약 6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명실상부한 FTA 교역시대가 도래하였다.

국제적으로 보면, 2015년 4월 기준으로 WTO에 보고된 FTA만 해도 612개에 이를 정도다. 기존에는 서로 경제적, 지리적으로 이해관계가 큰 국가들 위주의 FTA가 우선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외교적, 정치적 동기부여가 더해졌다. 현재 세계는 Mega-FTA¹⁾라는 이름 하에 FTA 시대 제2막을 시작하려고 있다. 그리고 그 선봉에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²⁾와 최근 글로벌 G2 패권의 중심으로 떠오른 중국이 주도하는 RCEP³⁾가 현실적인 TPP의 대항축으로 작

-
- 1)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FTAAP(아태자유무역지대),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처럼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해 통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무역자유화협정을 가리킨다.
 - 2) TPP는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혹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으로 부른다.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 10월 5일(현지시각) 협상이 타결됐다. TPP는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P4) 등 4개국의 소규모 FTA로 시작했으나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협상이 본격화 됐다.
 - 3)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 추진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이 본격적으로 체결되면 인구 기준 최대 규모(34억명)의 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명목 국내 총생산은 19조 7천 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계기로 알셉에 대한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으며 2013년 5월 첫 협정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협정의 내용이 확정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하고 있다.

TPP는 명실공히 메가-FTA의 선두주자다. 이 과정에서 초기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⁴⁾이라고 불리던 것이 지금의 TPP라는 명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들 TPP협상 참여 12개국의 GDP 비중은 전 세계의 37.1%⁵⁾에 달하고, 교역 비중은 전 세계 교역의 25.7%, 인구는 11.4%를 차지한다. TPP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 지적재산권, 무역 규제 조치, 원산지 규정, 위생검역, 기술장벽과 더불어 정부조달과 경쟁정책 등 기존의 FTA 내 거의 모든 주요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과거 어떠한 FTA보다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RCEP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화 전성기를 재현하겠다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⁶⁾, AIIB⁷⁾ 등과 맞물려 중국이 TPP 가입보다는 우선적으로 독자적인 주도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 세계 무역체제의 중심에 부각한 FTA는 관세 철폐 및 인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으로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새로운 성장과 무역창출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FTA 체결국별 상이한 원산지 규정, 관세율 그리고 통관절차 등의 적용 방법 및 기준이 달라 이를 확인, 적용하고 이행함에 있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여 그 효과가 반감되는 일명 스파게티볼효과(Spaghetti bowl effect)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은 결국은 각 협정국이 비 협정국에 대하여 다른 관세와 통관상의 대우를 하겠다는 것으로 협정국이나 역내(상호협정국 내)의 생산품 여부를 결정하는 원산지 제도에 관심을 더하고 있다

4)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TPSEP) or P4.

5) 2014년말 기준 38조 1,684억 달러, 한화 약 4경 2,004조원.

6) 중국 중서부에서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와 중국 남부 해상과 동남아, 인도양, 지중해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 건설.

7)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설립을 제안하고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21개국이 모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IB의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선진국 주도의 기존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체제에 대한 불만과 한계로 인해 AIIB 참여를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 중 유일하게 MOU에 참가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참여를 선언했다. 2015년 3월 일본과 미국은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했으며, 미국의 경우 한국의 AIIB 가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은 2015년 3월 26일 AIIB 참여를 결정했으며, 4월 11일 창립 회원국(Founding members)으로 확정되었다.

8) 많은 나라 사이에 동시다발로 FTA가 체결되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다량 투입돼 협정체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는 표현으로 자그디시 바그와티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세계관세기구(WCO)는 교토협약을 통하여 이러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으며, WTO 차원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마련된 원산지규정 제정(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비특혜분야에 적용될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FTA의 역외국에 대한 차별과 이행에 있어서의 복잡성 그리고 WTO 무역체제와의 불일치성과 무역왜곡을 이유로 특혜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통일화하기 위해서 WTO 규정의 주요 원칙에 합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원산지협정으로 원산지규정을 위한 협상력이 부여되고 통일원산지규정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특혜원산지규정의 통일화 또한 가능한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통일화 원칙과 동일선상에서 협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통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이유는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에 있어 투명성과 단순함을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무역정책상 제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독자적인 원산지결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목적의 결정기준과 국가별로 다른 관세 대우를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별로 다른 관세 대우를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도 각 협정별로 상이하다. 이렇게 다양한 원산지결정기준은 개별 국가의 정책목적에 따라 무역장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증진과 원활화를 위해 원산지관련 규정을 최대한 국제적으로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산지제도를 이야기 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설명하곤 한다. FTA 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⁹⁾처럼 수입에 있어 선택된 국가들에게만 관세의 철폐나 인하와 같은 특혜시장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 규정과 덤핑방지 관세 등 비최혜국대우를 위한 관세의 적용 여부 결정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한 비특혜원산지 제도이다.

하지만, 원산지 제도는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행정절차에 따라 구현되고 적용

9)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 1968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에서 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시작됐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 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 세율보다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특별대우를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된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물품이 어느 국가의 물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출입통관의 현장에서 증명과 확인과정으로 실현되는 것이 제도 내용의 대부분이다. 행정적 측면에서 원산지 제도는 크게 ‘원산지 결정’ ‘원산지 확인’ ‘원산지 표시’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원산지 확인’은 ‘원산지 증명’과 ‘원산지 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출입업자가 결정한 원산지를 세관관서에 증명하고 세관관서는 이를 확인하여 최종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과 통관 후 개별 국가의 정책목적에 따라 이를 표시하고 유통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의 원산지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수출입 통관의 실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원산지’가 얼마나 우리의 실생활에 관련되어 있으며 실제 원산지제도가 현장에서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의 연관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실제 세관공무원들이 원산지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원산지증명서 발행, 원산지검증, 원산지표시 단속 등에 관련된 절차적 규정의 통일과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세관행정의 수요자인 수출입업체의 측면에서도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의 이행과 각 협정국이 국내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산지 규정의 통일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입장을 전제로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원리 등 기초사항에 대한 논의를 최소화하고 원산지 증명과 세관의 확인 그리고 원산지표시 등 절차적 규정의 발전적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원산지 제도와 규정을 다루고 있는 문헌의 조사, 수집 및 분석과 더불어 관세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 연구학회의 학술논문과 주요국의 원산지 규정 및 입법체계를 찾아보고 세관의 원산지 담당 및 검증직원의 인터뷰, 검증사례,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 등의 분석을 통해 통관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원산지 제도 절차적 규정의 적용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체계와 논리성을 추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내의 관련 문헌과 연구지 조사를 통해 원산지제도의 개념과 기능을 찾아보고 이의 실현을 위해 체결된 협약 등 국제규범과 각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절차적 규정에 대한 법원(法源)을 고찰하고 연구에 필요한 용어 등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필요한 자료와 연구논문은 주로 Riss를 활용하여 검색하였으며 논리전개의 편의를 위해 먼저 원산지제도의 개념과 국제법규 및 협약, 그리고 국내 법체계, 마지막으로 원산지제도의 절차적 규정으로 정리하였다. 원산지제도의 절차적 규정에서는 결정된 원산지 국가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수입통관 이후에 적정성을 심사하는 원산지검증 절차의 법적 근거와 대표적인 비특혜원산지 제도인 원산지표시의 관련 법규를 살펴보았다.

제3장의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적용 현황 분석에서는 제2장에서 정리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업체와 관세당국에 적용되고 있는 절차적 규정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현황에서는 특혜관세 적용대상별로 원산지 증명과 절차를 살펴보고, 관세학회에 게재된 연구 논문¹⁰⁾의 통계(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제공)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증명서¹¹⁾의 발행과 각 국의 운영현황 및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입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관세학회지에 게재된 원산지검증사례 연구자료¹²⁾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관세당국의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현황과 한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협약상대국의 검증현황 자료를 정리하고 검증의 실태와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검증을 직접 수행한 세관직원의 인터뷰를 통해 협정별로 원산지검증의 주요 특징을 짚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원산지표시 및 확인에서는 수출입통관시 원산지증명서와 특혜관세 신청에 대한 심사 및 확인 내용을 검토하고 세관의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 등을 통해 절차적 규정 적용의 실체를 탐색하여 접근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고찰한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검증의 쟁송사례를 살펴보고, FTA 원산지 증명의 절차규정 준수율 미비, 덤핑방지관세 등 비특혜관세의 통관단계에서의 심사

10) 송선욱 (2015),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p. 83-101.
 11) 총 24개국에서는 상업회의소가 비특혜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위한 유일한 기관이며 약 52개국에서는 정부부서, 세관당국 또는 다른 발행기관과 그 역할을 공유하고 있다.
 12) 정재완 (2015),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과 원산지관련 행정심판사례의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p. 3-23.

또는 확인 미흡, 특혜원산지과 원산지표시 기준의 불일치 문제 등을 추출하고 이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 제6장은 결론으로서 논문에서 전술한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최근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의 Mega-FTA 라는 새로운 변화로 이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원산지 판정규정 자체에 대한 연구, 기 체결된 FTA 원산지규정과 비교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자적 수준에서 비특혜원산지 규정의 통일화를 역설하는 연구들이 있지만 특혜원산지 규정의 통일화를 위한 연구는 비교적 뚜렷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원산지규정의 통일화라는 논의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아닌 이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관세당국의 절차적 규정에 대한 통일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권태휴(2014)¹³⁾는 FTA하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이용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원산지증명서 보험제도와 원산지확인서의 사전인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고, 양영미(2014년)¹⁴⁾는 특혜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 WTO와 FTA하에서의 조화로운 통일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정재완(2015년)¹⁵⁾은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을 분석하고 관세 당국은 검증의 효율성 방안을 기업체에게는 절차적 측면의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남풍우(2010년)¹⁶⁾는 원산지검증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해 정부의 주도적인 검증대비책을 주문했으며 박홍규(2014년)¹⁷⁾는 우리나라 원산지 검증사례를 통해 정부와 업계와 학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재완(2010년)¹⁸⁾은 원산

13) 권태휴 (2013), “원산지증명제도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p. 58.

14) 양영미 (2014), “특혜원산지규정의 해석과 적용-WTO와 FTA하의 조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pp. 67.

15) 정재완 (2015), 전개논문, p. 20.

16) 남풍우 (2010),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p. 16-19.

17) 박홍규 (2014),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pp. 34-50.

18) 정재완 (2010),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의 유통방지 대책연구,” 용역연구보고서, 한남대학교 산학

지표시위반 수입물품의 유통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 했으며, 송선욱(2015년)¹⁹⁾은 비특혜원산지 증명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산이 국내산 둔갑 등의 방지를 위한 제조업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연구들에서는 원산지결정이라는 실체적 기준에 대한 논의와 통일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는 개별적인 분야로 연구되어 특혜원산지와 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산지 증명과 검증이라는 확인절차와 원산지표시라는 비특혜분야를 아울러 검토함으로써, 특혜와 비특혜 분야의 증명절차의 비교는 물론 FTA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표시를 위한 결정기준의 불일치 문제 등의 연관성을 볼 수 있는 차별성을 갖는다.

협력단, pp. 45-53.

19) 송선욱 (2015),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p. 83-101.

제2장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법원(法源)

제1절 원산지제도의 개요

1. 원산지 제도의 개념과 기능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산지’라는 말은 접하게 되는 것은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 하면서부터 이다. 대부분의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음식점에서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친절하게 되어 있다. 물론 우리는 원산지를 물품 구매의 주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확한 물품의 원산지 정보제공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깨끗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여긴다.

통상적으로 ‘원산지’란 동물이 태어나 자랐거나 생선이 잡힌 영해국(공해의 경우에는 어선 국적국)이며 공산품은 당해물품을 생산·제조·가공한 국가를 의미한다. 즉 당해물품의 국적을 뜻한다.²⁰⁾

그리고 ‘원산지 제도(Rules of Origin)’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이 상식적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통해 결정되고 각종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이다.²¹⁾

원산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입통관시 관세상의 특혜와 비특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 최빈개도국 양허(특혜)관세 적용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긴급수입 제한조치, 쿼터제도 등 각종 무역제한조치와 원산지확인과 표시²²⁾ 등 비특혜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놓았다. 물론 FTA 등 각종 협정에서도 각각의 규정이 정해져서 운영된다. 하지만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이 안되어 세계 각국은 아직 물품의 국적을 정하는 통일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자국 사정을 감안한

20) 성윤갑 (2007), 「FTA 원산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1)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1), 「원산지규정의 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한국무역협회.

22)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중 HSK 4단위 기준 총품목수 1,221개중 55%에 달하는 674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음(2015년 10월).

규정과 기준을 정하여 원산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관세상의 특혜지위 부여를 결정하는 기능으로 인해 각종 무역정책이나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특정국가 및 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로서 표현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원산지표시제도는 우리생활에 가장 근접한 제도로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정지역의 생산품이 시장에서 차별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브랜드 소유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유명브랜드 제품, OEM제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주고, 한국의 인삼·홍삼제품 및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 등의 생산자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동일제품과 차별화를 가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기능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자연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해 특정지역의 특정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데도 사용된다.

2. 원산지 규정의 내용과 분류

가. 원산지 규정의 의의와 내용

원산지 규정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이다. 즉 특정 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총칭한다. 그럼으로 국제법규, 법률, 규정, 판례 및 행정결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증명서류, 원산지표시대상과 방법, 원산지확인절차 등이다.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법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확인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불 대외무역법에 이를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 규정은 특정 무역조치와 결합하여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긍정적 효과로는 교역량 증가, 역내투자증가, 역내부품산업의 성장촉진 등이 있으면 원산규정의 복잡성, 불명확성, 협정 간의 차이에 의한 무역장벽 등이 있을 수 있다. 주요 원산지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1) 원산지 판정

어떤 물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쳤을 경우 이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적 요건을 말하며 완전생산 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2) 원산지 확인

특혜관세 및 덤핑방지관세 등의 부과, 수입제한물품이나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 물품 등을 단속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받고 현품과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원산지 판정 적용 과정으로 원산지증명과 원산지검증으로 구분한다. 원산지 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기관이나 수출입업자가 법령과 협정에 정해진 방식으로 원산지를 증명서를 발행함으로써 특정물품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이다. 원산지 검증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이다. 원산지 표시는 판정된 원산지를 상품에 최종소비자가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인쇄, 주소, 라벨링 등) 하는 것이다

나. 원산지 규정의 분류

국제규범과 각 국의 국내법에 의한 각종 원산지 규정은 그 적용 목적에 따라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원산지 규정과 관세상의 특혜 외의 목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특혜원산지 규정은 차별적인 무역특혜의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 즉 역내국 생산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써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 적용한다. 최근에는 국가간 또는 지역간 FTA에 의해 협정국간에만 저관세율 및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비특혜) 원산지에 비해 원산지 증명 및 확인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롭고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물품에 대한 수입할당이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국가별로 수입 가능한 수량이 관리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포함된다. 그러나 특혜원산지와 비특혜원산지 규정을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각 나라마다 동일 법령에 규정하거나 별도 법령에 의해 규정하는 것으로 이런 분류는 이론적인 구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원산지 규정을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실체적 기준과 결정된 원산지를 해당 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산지 제도(Rules of Origin)’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해 정해진 원산지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고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한 기관은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가짐으로 원산지 증명과 확인은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하며 관련된 통관절차도 준수되어야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산지를 증명하고 이에 관련된 서류 등을 규정에 맞게 보관하고 사후에 원산지 확인 및 검증에 대응하는 절차적 규정은 관련 수출입업체는 물론 세관과 같은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생 기관 등 많은 분야의 업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원산지 규정의 분류

	규 정	내 용
목적별	특혜원산지 규정	관세법령 FTA 협정 및 법령
	비특혜원산지 규정	대외무역법령 WTO 원산지 규정
기능별	실체적 규정	원산지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원산지결정기준
	절차적 규정	원산지증명 및 검증 원산지 표시 및 확인

자료 : 연구자가 분류 작성

3. 원산지 제도의 국제 법규 및 협약

가.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1883)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되고 1884년 발효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의 제10조²³⁾에서 원산지 또는 생산자에 관한 허위표시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서 국제무역과 관련한 원산지 규범의 시초로 인정되고 있다.

나. GATT 1947²⁴⁾

GATT에서는 다자간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와 세계교역의 확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이라는 가치하에서 세계무역증대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에 반해 원산지 규정은 제9조 원산지표시(Marks of Origin)²⁵⁾로만 규정되어 있고 원산지판정의 기준이나 관련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원산지와 관련된 비용이 국제무역의 증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²⁶⁾

-
- 23)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10조(원산지 또는 생산자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부착한 상품의 수입 등에 관한 압류)
1. 전조의 규정은 상품의 원산지 또는 생산지, 제조자 혹은 판매인에 관하여 허위표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사용의 경우에도 사용된다.
- 2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
- 25) GATT(1947) 제9 조 원산지 표시.
1. 각 체약당사자는 표시요건에 관하여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에 대하여 제3국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당사자들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기만적이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되, 이러한 조치가 수출국의 상거래와 산업에 야기할 수 있는 어려움과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3. 행정적으로 실행가능한 때에는 항상, 체약당사자는 요구되는 원산지표시가 수입시에 부착되는 것을 허용한다.
 4. 수입상품의 표시와 관련된 체약당사자의 법률과 규정은 동 상품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또는 그 비용을 불합리하게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준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정정표시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기만적인 표시가 부착되거나 요구되는 표시가 고의적으로 누락된 경우가 아니면 수입전에 표시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어떠한 특별관세나 벌칙도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6. 체약당사자들은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식별력 있는 지역적 또는 지리적 명칭에 손해가 되도록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방식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가 자신에게 통보한 상품의 명칭에 대한 앞 문장에 명시된 약속의 적용에 관하여 동 체약당사자가 제기하는 요청 또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 26) 조성제 (2007), “WTO 통일원산지규정 협상동향과 대응방안,” 「창업정보학회지」, 제1권 제1호, 한

다. UNCTAD

UNCTAD²⁷⁾ 제1차와 제2차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생산품에 대한 선진국의 일률적이고 무차별적인 특혜관세 부여를 제안하였고 일반특혜관세(GSP)의 실시에 대한 공동결의를 제안한 바 있다.²⁸⁾ 이후 1976년 제4차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공산품 수출의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이 논의되어 구체적인 사항이 합의되었으며, 합의사항 중 원산지 규정은 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각 국가간의 조화로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계산할 때는 개도국 전체를 하나의 계산단위로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²⁹⁾

라. KYOTO 협약

국제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CCC)는 1973년 5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적 조화를 통하여 국제무역의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관세협력, 즉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을 승인하였다. 본 협약에서는 2개국 이상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에 대해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주요 공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류에 관한 부속서 D2에서는 특혜관세의 적용이나 여타 절차상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원산지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허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산지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³⁰⁾

그러나 교토협약은 오늘날 원산지규정의 최초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부속서를 수락한 국가들이 미미하고 강제성도 없어서 국제 규범적 역할은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국창업정보학회, p. 74.

27)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1964년 3~6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회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총회에서 논의되고, 같은 해 12월 30일에 채택된 유엔총회의 결의 1995(XIV)에 의해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상설기구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의 확대 및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경제발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목적으로 운영.

28) 조성제 (2007), 전개논문, p. 74.

29) 이춘삼 (1996),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통일화 과정," 「중재학회지」, 제6권, 한국중재학회, p. 297.

30) 이춘삼 (1996), 상계논문, p. 299.

마. WTO 원산지 규정

각국이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의 제도적 기반을 국제적으로 조성하여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무역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협정을 통해 출범한 WTO협정 부속서에 원산지규정 협정(Agreement on Rule of Origin)을 제정하였다.

<표 2-2> 통일원산지 규정 구조

구조	주요내용
서문 (Preamble)	원산지협정과 통일원산지 규정의 관계
정의 (Definition)	생산, 물질, 원산지, 비원산지 물품 등 정의
일반규정 (General Rules)	적용범위, 품목분류, 원산지결정방법 등
첨부1 (Appendix 1)	완전생산 물품의 정의
첨부2 (Appendix 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자료: 채형복 (2001), 「국제원산지제도」, 높이깊이, p. 30.

그러나 상기 협정은 기본원칙과 그 필요성은 언급되었지만 세부적인 결정요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는 향후 진행되는 통일원산지규정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통일 원산지 규정의 제정을 위한 시작일 뿐 현재까지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결실을 맺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일원산지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원산지제도 관련 국내 법체계

1. 관세법과 원산지 규정

1964년 관세법 시행령 제1조 원산지증명제도를 통해 협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및 증명서 요건조항이 신설되었고 이것이 원산지 제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3> 관세법의 원산지 관련 규정 체계

법령	조문
관세법 (법률 제12307호, 시행 20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29조 (원산지확인기준) · 법 제230조 (원산지 허위물품 등의 통관 제한) · 법 제230조의2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법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 법 제232조의2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 법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 법 제233조의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법 제240조의3 (유통이력 조사)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52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6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 제236조2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 제236조6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등) · 제236조7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 제236조8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절차 등)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3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 제75조 (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 제76조 (직접운송원칙) · 제77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 제77조의2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 제77조의3 (조사 전 통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제2014-6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원산지표시 제도) · 제3장 (원산지증명 및 확인)

자료: 연구자가 분류 작성.

이후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이 관세법 시행령에 신설되었으며, 1976년 이후 결정기준의 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적용되는 물품 6개 유형을 도입하였으며,

실질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 기준을 도입하였다.³¹⁾ 하부규칙으로는 관세법 시행규칙과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있다. 관세법령의 원산지 규정은 주로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최소한도로서의 통관, 조사, 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외무역법에 정한 비특혜원산지 대상 물품의 통관단계에서의 심사 및 확인절차를 관세법 하위 규정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대외무역법과 원산지 규정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종전의 무역거래법을 대체하여 1986년에 제정되었다.³²⁾ 우리나라의 원산지 규정은 1974년 CCC(관세협력이사회)체서 체결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의 원산지 관련 부속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64년 협정세율적용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이전인 1957년부터 무역법(현 대외무역법)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1987년 원산지 허위표시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었고 1991년에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4단위 326개) 지정되었다. 현재 원산지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집행을 위한 하위 규정으로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이 있다. 대외무역법령의 주요 규정의 대상은 수입품,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품, 수출품이며 주요 내용은 원산지 표시, 원산지 판정,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및 벌칙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세법과 중복되어 혼돈이 야기될 수가 있고 하위규정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등에 동일한 규정과 원산지양식이 별도 규정되어 있어 절차적 규정의 이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31) 양영미 (2014), “특혜원산지규정의 해석과 적용-WTO와 FTA하의 조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p. 45.

32) 법률 제3895호 (1986.12.31).

<표 2-4>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관련 규정 체계

법령	조문
대외무역법 (법률 제12285호, 시행 20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법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법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475호, 시행 20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5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제66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 제90조(수수료) 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산통부고시 제2014-124호 시행20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5조(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 제91조(원산지의 확인) · 제92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 제93조(원산지 확인에 있어서의 직접운송원칙)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 규정 (산통부고시 제2014-136호, 시행20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³³⁾에 의한 수출증명서 발급절차 규정 · 제2장 (일반수출물품 원산지 증명) · 제3장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 증명) · 제4장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제5장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제6장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제7장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

자료: 연구자가 분류 작성.

33)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1-2조(종류)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일반특혜관세(GSP),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 FTA 관세특례법과 원산지 규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원활한 이행과 계약상대국과의 교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FTA 관세 특례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FTA 관세특례법의 원산지규정은 주로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법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표 2-5> FTA 관세특례법의 원산지 관련 규정 체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42호)³⁴⁾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76호) ·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24호) 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601호)

자료: 연구자가 분류 작성.

3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그 밖의 원산지 관련 법령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한과 북한사이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 법 제26조에는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 그 전제가 북한산 물품이라는 원산지의 판단이다. 만일 북한산이라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된 물품일지라도 관세법의 과세규정이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50조에는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이 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25조에 수입농산물 및 수입 가공농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의 지정과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의 판정기준은 모두 대외무역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수입물품 통관단계에서 이 법이 직접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이 법 제10조 내지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5조에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수산물품질관리법도 시행령 제18조에서 수입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수입물품 통관단계에서 이 법이 직접 적용될 여지는 없다.

제3절 원산지제도의 절차적 규정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규정

가. 특혜관세와 원산지증명

특혜관세란 교역확대를 주된 이유로 일정요건을 갖춘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인하된 관세율의 적용’ 또는 ‘무관세율 적용’을 통한 납세부담의 경감혜택이 부여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현재 “특혜관세”라 분류될 수 있는 것은 관세법 제73조 내지 제80조에 의한 국제협력관세와 편익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양허관세 등이다. 관세법 제73조에는 정부가 대외무역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협상을 통해 관세양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에 따라 양허된 세율이 국제협력관세다. 국제기구와 관세협상은 GATT(WTO), UN(UNCTAD, ESCAP) 등과 이루어진 적이 있고, 특정국가와의 협상은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와 이루어진 적이 있다.³⁵⁾

FTA는 관세법에 의거하여 협상이 진행되고 관세가 양허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조약의 형태로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발효된다. 이로서 양허되는 관세율은 조약 자체도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적용될 수 있지만 시행을 위해 별도로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을 제정해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관세법의 특례로서 적용된다. 이 경우도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무세화하는 것으로 협정을 맺으므로 ‘특혜관세’에 해당한다.

35)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양허세율은 대통령령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를 보면 확인 가능하다. 여기에는 알몬드·레몬·버찌 등의 농산물뿐 아니라 포도주·포카니위스키 등의 주류, 철근·동의 선·알루미늄 판 등 원자재도 포함되어 있다.

<표 2-6> FTA 등 특혜관세 대상물품 통관 현황

특혜관세종류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건)	금액 (백만\$)	건수(건)	금액 (백만\$)	건수(건)	금액 (백만\$)
WTO-GATT개도국양허 ³⁶⁾	2	1.7	2	1.6	-	-
ESCAP-APTA 양허 ³⁷⁾	197,218	6,066	225,224	6,670	249,200	7,926
UNCTAD GSTP 양허 ³⁸⁾	2	6	24	34	38	48
최빈개도국 일반양허 ³⁹⁾	10,631	2,106	14,813	2,480	17,055	3,498
FTA 특혜관세	1,460,482	67,700	1,840,466	74,846	2,168,765	79,943
특혜적용 합계	1,668,335	75,879.7	2,080,529	84,031.6	2,435,058	91,415

자료: 연구자가 CDW(관세청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추출.

특혜관세는 무역업자에게 관세라는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인 만큼 특혜관세의 적용은 거시적으로 보면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를 통해 당해 상품의 교역확대에 기여한다.⁴⁰⁾ 특혜관세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원산지의 증명과 확인이라는 행정절차가 따른다. 하지만 특혜관세의 일종인 WTO 양허관세 품목 또는 편익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가 우리나라 교역상대국 대부분이므로 이미 ‘특혜’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있어 원산국을 구분하여야 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⁴¹⁾

36) TNDC :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37)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38) GSTP :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의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양허관세.

39)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관세법 제76조).

40) 무역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운용되는 관세인상은 관세인상을 통한 수입억제와, 관세인하를 통한 수입촉진의 두 가지로 나뉜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주요 블록경제국가들이 많이 시행한 차별적 관세정책이 역외 국가산 물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억제였다면, GATT 및 WTO 체제하에서 각국이 적극 활용하는 차별적 관세정책은 관세 인하라는 특혜를 통한 역내 국가산 물품의 무역촉진에 초점을 둔다.

41) 정인교 (2010),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p. 33.

<표 2-7> 특혜관세와 원산지 증명 대상

구분	세율명	근거법령(약식명)	증명여부
특혜 관세	FTA 특혜세율	FTA특례법	증명
	WTO 양허관세	관세법	증명불요
	편의관세	관세법	증명불요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GSP)	관세법	증명
	UNCTAD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GSTP)	관세법	증명
	WTO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TNDC)	관세법	증명
	아시아태평양협정 양허관세 (APTA)	관세법	증명
	북한산 물품 관세특혜	남북교류협력법률	증명

자료: 연구자가 분류 작성.

그 외 WTO 회원국인 특정국과의 양자간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비록 특정국가와의 협상에 의해 관세특혜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MFN) 원칙⁴²⁾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에 다 같이 그 양허관세가 적용되므로 역시 원산지를 구분하여야 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의 양허관세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FTA에 의한 특혜관세, 그리고 북한산 물품에 대한 관세상 특혜는 특정국의 특정한 수입물품에 국한하여 적용되므로 원산지증명서로서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실익이 충분하다. 따라서 수입자가 이들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나. 비특혜관세와 원산지증명

화물에 대한 경제적 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산지제도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특혜목적 뿐만 아니라 각종 무역정책 등의 활용

42) 최혜국대우에는 조건이 붙는 것과 무조건의 것이 있으나, WTO 협정에 의한 최혜국대우는 ‘즉시 또한 무조건으로’ 주어지고 또 대가를 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최혜국대우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로, 예를들어 A국과 협정으로 어떤 물품의 10% 관세를 5%로 인하하기로 하고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을 합의하였다면 그 후 B국에 같은 물품의 관세를 3%로 인하하기로 할 경우 A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도 3%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을 위한 비특혜 목적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 수출자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해 불공정무역의 시정을 요구하는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수량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WTO 반덤핑협정이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등에서 비특혜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덤핑방지관세(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관세법 제67조의 2) 등이 있다. 비특혜관세 부과를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현재 100개국 이상의 2,000개 이상의 상업 회의소에서 매년 1,500만개가 발행되고 있고 한국도 매년 70만개 이상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로 발행되거나 관리가 소홀해지면 선량한 국내 제조업체 등이 피해를 보거나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문제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특혜원산지 증명서도 중요하지만 비특혜원산지 증명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덤핑이나 보조금에 따른 불공정 무역이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때 발동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가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이 필요하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의 WTO 가입 시 12년 동안 중국산 물품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⁴³⁾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무역구제조치와 원산지규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중국산 물품에 대한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는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0조, 미국 19 USC 2451, EU Council Regulation No 427/2003 23) 등 각국의 법령에 도입되어 있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물품을 특정할 원산지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도 지재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 표시 위반 등의 제재대상 불공정무역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재조치의 시행에 원산지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반덤핑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조치가 시행되면 제3국을 통한 수출, 동종 물품에

43)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액(TE) 감축이행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익급증 때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일종의 긴급구제조치(기존의 GATT 19조 세이프가드 조항과 무관).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세이프가드는 관세인상만은 허용하되 상대체약국에 홍보 할 의무는 있으나 보상의무는 면제된다. 발동요건은 수입물량기준과 수입가격기준 두 가지가 있다.

대한 사소한 변경, 미완성(미조립) 상태의 반제품(부품) 수출 등 다양한 우회가 발생할 수 있다. 애초 무역구제조치가 이러한 우회 수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각국 대응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EU의 경우 반덤핑 규정인 Council Regulation (EC) No 1225/2009 26)의 Article 14.3은 원산지 개념 정의가 필요할 때 일반적인 비특혜 원산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한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Article 25는 단지 우회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공정이나 가공도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Council Regulation (EC) No 1225/2009 Article 13은 제3국에서의 조립공정이 반덤핑 조사 개시 후 상당 수준 증가하거나 무역구제조치 대상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60% 이상이 사용되어 무역구제조치의 효과를 약화하는 경우(다만, 부가가치가 25% 이상인 경우는 제외)에는 우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9 USC Subtitle IV에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19 CFR Part 351은 이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상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19 USC 1677j와 19 CFR 351.225는 사소한 공정을 거쳐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우회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Scope Rulings을 통하여 애초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8> 비특혜관세와 원산지 증명 대상

구 분	세율명	근거법령	증명여부
비특혜 관세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51조	증명
	상계관세	관세법 제57조	증명
	보복관세	관세법 제63조	증명
	특정물품긴급관세	관세법 제67조의 2	증명

자료: 연구자가 분류 작성.

이러한 원산지증명 관리제도는 대부분 원산지증명서의 요구 조건, 발행기관, 원산지증명서 관리 및 원산지증명서류의 확인 등의 규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국의 판단이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차별적인 수량제한 조치 등을 위한 원산국의 판정도 비특혜원산지 제도의 영역이다. 그 외 관세법에 의한

관세평가나 통관절차,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등에 있어 특정한 ‘국가’를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비특혜원산지 제도의 영역이다

다.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의 절차에 대한 규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FTA관세특례법 등에 분산·운영되어 오고 있다. 먼저 관세법의 원산지 규정은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는데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⁴⁾ 관세법 제232조는 특혜관세적용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제233조에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36조에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및 원산지증명서의 요건과 함께 원산지검증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본질적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 제출 및 확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관세법 제 232조의 2⁴⁵⁾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이 소관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⁴⁶⁾에서는 대외무역법 37조를 근거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공회의소가 대부분의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일부 APTA 등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관세청 산하의 세관에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최근 각종 FTA의 발효에 의해 인증수출자 등 세관의 업무가 확대되면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일부 세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44) 관세법 제229조

45) 관세법 제 232조의 2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6) 관세청고시 제2015-7호, 2015.1.30., 일부개정

<표 2-9> 원산지 증명 관련 관세법령

구분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청 고시 ⁴⁷⁾
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232조 ⁴⁸⁾ 232조의2	236조, 236조의2~236조의7	-	제3장 제1절 (24조~37조)
조사 등 (서류보관 등)	233조 제1항~3항	236조의8 ⁴⁹⁾	77조의3 ⁵⁰⁾	

자료: 연구자가 분류 작성

다음으로 대외무역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수출물품의 원산지 발급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표 2-10> 원산지 증명 관련 대외무역법령

구분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산자부 고시 ⁵¹⁾
원산지증명서 발급	37조 ⁵²⁾	66조 ⁵³⁾		제3장~7장

자료: 연구자가 작성

대외무역법 제37⁵⁴⁾에 의하면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47)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장 2015-7, 시행 2015.1.31).

48)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제출 등.

49)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50) 관세법 시행세칙 제77조의3(조사전통지).

51)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36호, 시행 2014.8).

52) 대외무역법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5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54) 대외무역법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간의 특혜관세(GSTP, APTA, TNDC)와 일반특혜관세(GSP), 남북교역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절차와 양식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원산지관리에 관한고시(관세청)와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산업통상부)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표 2-11>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구 분	세율명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⁵⁵⁾	FTA 특례고시 ⁵⁶⁾	수출물품원산지 증명 발급규정 ⁵⁷⁾
특혜 관세	FTA 특혜세율	○	○	○
	WTO양허관세	○	-	○
	편익관세	○	-	○
	일반특혜관세 (GSP)	○	-	○
	UNCTAD개발도상국 간 양허관세 (GSTP)	○	-	○
	WTO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TNDC)	○	-	○
	아시아태평양협정 양허관세 (APTA)	○	-	○
	북한산물품 관세특혜	○	-	○
비특혜 관세	덤핑방지관세	-	-	○
	상계관세	-	-	○
	보복관세	-	-	○
	특정물품긴급관세	-	-	○
	원산지표시 일반수출물품	-	-	○

자료: 연구자가 분류 작성.

55) 관세법 제 232조의 2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5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근거).

5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36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에 의거 발급.

그리고 원산지관리에 관한고시(관세청)와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산업통상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증명서 양식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협정의 원산지증명서가 중복되는 물론 표준양식에 있어서 경미한 차이도 발견되고 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원산지제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표 2-12> 원산지증명서 양식 운영비교

	원산지관리에관한고시	수출물품원산지발급규정
원산지 증명서 양식	[서식 17]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서식 17의2]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 [서식 17의3] GATT원산지증명서(TNDC) [서식 17의4] GST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서식 17의5] Asia-Pacific Trade Agreement [서식 17의6]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서식 17의8] 일반 원산지증명서 양식	[별표 1의2]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별표 2의1]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GSP) [별표 2의3] 뉴질랜드 일반특혜원산지증명서 (FORM 59A) [별표 3의2] GATT 원산지증명서(TNDC) [별표 4의1]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APTA) [별표 5의1]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원산지증명서(GSTP)

자료: 연구자가 분류 작성

라. 주요 국가의 비특혜원산지 증명 규정

(1) 미국

원산지증명서는 특정화물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제무역서류로, 수입신고절차의 일부로써 세관당국에 의해 종종 요구된다. 그 서류는 수출업자나 그의 대리인에 의해 작성되며 상업회의소, 무역기관 및/또는 영사관과 같은 수출국의 기관에 의해 증명된다. 미국의 경우 원산지 증명제도와 관련하여 19 CFR 102 - Rules of Origin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품의 원산지 증명은 수입관세의 적용에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는 모든 화물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 없다. 즉,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없다. 항만세관장이 섬유나 의류 제품의 원산지국을 결정할 수 없다면 수입업자는 항만세관장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공된 정보나 이용 가능한 최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원산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CBP 보관으로부터 제품 반출이 거

부될 것이다.⁵⁸⁾

(2) EU

EU의 비특혜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첫째, EU로부터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대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상업회의소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nex 12 CCIP) 또는 특별 협정에 따른 특별증명서 모델을 활용하여 증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대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과 요구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시장접근 데이터베이스(MADB)는 제3국 시장의 수입 조건, 즉, 관세율, 세관통관절차 등 공적절차, 통계, 무역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 원산지 규정,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로 EU로부터 수출하는 회사에게 제공한다.

둘째, EU로 수입하는 경우 비특혜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는 화물이 EU 규정(CCC Article 23-25, 35-40, 그리고 CCIP Annexes 9-11)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체크해야 한다. 공동체 규정이나 특별 협정(예를 들어 섬유)에 의해 요구된다면 수출국에서 확인된 원산지 증명서가 수입시 제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섬유제품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섬유 협정), 농산물을 위한 원산지증명서(Article 55-65, Annex 13 CCIP), 통일 원산지증명서(특별한 양식이 없으나 CCIP Article 47의 조건) 등이다.

(3) 중국

중국은 비특혜원산지 증명서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국무원령 제416호 2004년 9월 3일)”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수입화물의 원산지증명과 관련해서는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해관신고 수속 시, 마땅히 본 조례 규정의 원산지확정표준에 따라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동일 화물의 원산지가 같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원산지를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⁹⁾ 또한 수입화물이 수입되기 전에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수입화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타의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관에 곧 수입될

58) 19 CFR § 102.23 (b).

59)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11조.

화물의 원산지사전확정결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신청인은 마땅히 규정에 따라 원산지사전확정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관에 제공하여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해관은 원산지사전확정 서면신청 및 필요 서류 접수일로부터 150일내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에 대한 원산지사전확정결정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를 대외에 공표하여야 한다.⁶⁰⁾

둘째,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수출화물의 송화인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소속의 각 지방 수출입검험검역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분회(이하 “증명발급기관”이라 약칭함)에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수출화물의 송화인은 반드시 증명발급기관에서 주책(注册, 등록) 등기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원산지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증명발급기관에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⁶¹⁾

한편 증명발급기관은 수출화물 송화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 원산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발급을 거절하여야 한다.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 발급관리 관련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국무원 기타 관련부문, 기구와의 회동을 통해 별도로 제정 한다. ⁶²⁾

셋째, 수출화물의 원산지에 대한 상대 수입국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 해관, 증명발급기관은 수출화물의 원산지상황에 대한 핵사(核査,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적시에 확인 심사 상황을 수입국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⁶³⁾

(4) 일본

일본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해서는 일본 상공회의소법(2006년 개정) 제9조 6에서 상공회의소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 수출입거래법 등에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표시 방법 등

60)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12조.
 6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17조, 제18조.
 6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19조.
 63)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20조.

원산지 규정이 제시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특혜관세와 관련해서는 관세감정조치법시행령(2015년 개정) 제5장 특혜관세 등(제25조-제31조)에서 원산지의 의의 및 증명,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⁶⁴⁾

2. 원산지 검증절차 규정

가.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원산지 검증은 협의로는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 증명서류 등 ‘원산지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원산지 검증의 목적이라면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고,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입 방지를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과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역내간 교역과 투자 촉진 및 상대국 검증요청의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검증은 수입자로부터 FTA상의 협정세율의 적용신청이 이루어진 상품에 대해 수입계약국 세관당국이 의문이 있는 경우, 그 생산품이 수출계약국의 원산지 상품인가 등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출입자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등에게 서면의 방식 등을 통해 질문하거나 수출자나 생산자의 현지 사업장이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조사 하는 제도인 것이다.

현행 미국과 EU, 일본 등 세계의 주요국들과 한국이 체결한 FTA하에서의 특혜관세제도는 서로 규정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원산지 사후확인 및 조사

64) 관세감정조치법시행령 제27조에서는 관세감정조치법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특혜 수입국 등의 원산지 물품을 동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특혜 수입국 원산지 물품을 증명한 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몇 가지 예외적인 물품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28조에서는 위의 규정에 있는 원산지의 증명에 관련된 물품을 수입 신고(입고 신청 등이 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입고 신청 등. 이하 본 장에서는 동일)또는 관세법 제78조 제1항 단서의 검사 기타 우편물에 관련된 세관 심사 때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이유로 그 때 제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 제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해당 물품을 동법 제73조 제1항(수입 허가 전의 화물의 인수)에 규정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도로서 원산지 검증제도를 모두 채용하고 있다. 물론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 특혜관세(GSP) 또는 개발도상국간 상호간 부분적 특혜협정(PTA)⁶⁵⁾에 따른 특혜관세도 협정 또는 협약국 국내법으로 검증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FTA의 증가와 더불어 검증에 의한 추정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나. 원산지 검증의 방법

원산지검증의 방법은 검증주체에 따라 직접검증, 간접검증, 그리고 혼합검증 등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미 FTA에 규정된 바⁶⁶⁾처럼 수입당사국이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을 ‘직접검증’⁶⁷⁾, 한·EU FTA에 규정된 바⁶⁸⁾처럼 수출국의 관세당국(또는 따로 지정된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하는 것을 ‘간접검증’, 그리고 한·아세안 FTA에 규정된 바⁶⁹⁾와 같이 간접검증과 직접검증을 혼합한 것을 ‘혼합검증’이라 한다. 직접검증에서도 수출국 관세당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간접검증은 전적으로 수출국관세당국의 협력하에 검증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결국 원산지검증의 주체는 수입국과 수출국 관세당국 모두라 할 수 있다.

<표 2-13> FTA 체결국별 원산지검증 방식

FTA	칠레,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아세안 인도	EFTA EU 터키	페루 콜롬비아	미국
검증방식	직접검증	간접검증 → 직접검증	간접검증 (참관가능)	직접·간접 중에 선택	직접검증 (섬유;간접)

자료 : 연구자가 분류 작성.

직접검증방식은 관세주권 확보, 국내 산업보호, 관세탈루와 우회수입 방지의 장

65) 한국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양허관세, WTO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양허관세, UNCTAD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양허관세가 있다.

66) 한·미 FTA 제6.18조.

67) 한·미 FTA에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출당사국에 검증을 의뢰하는 간접검증과 직접검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미 FTA 제4.3조).

68)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69) 한·아세안 FTA 부록 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4조.

점이 있는 반면 검증비용과 언어, 회계처리, 현지정보 등 현장검증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단점이 있고, 간접검증방식은 현장검증 효율성, 비용절감, 그리고 자국 수출자 관리 용이의 장점이 있는 반면 수출국 세관에 의존, 행정협조 실패시 관세손실, 행정부담 증가 및 우회수입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다.

다. 원산지 검증 시기와 절차

원산지검증이 실시되는 시기는 차별적인 관세율 적용을 신청한 시점부터 검증결과 관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시한 즉, 관세부과 제척기간 동안이다. 검증을 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통상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⁷⁰⁾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사실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이내다. 원산지검증의 절차는 각 FTA마다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그 실시시기관이 수입국 관세당국이거나 아니면 수출국 관세당국이거나를 막론하고 서면확인⁷¹⁾과 현장 확인의 형태를 가진다.

<표 2-14> 원산지 검증 절차

검증 실시기관	검증대상자	검증방법	검증절차
수입국 관세당국	수입자	직접/간접 검증	서면확인과 현장확인 병행
	수출자, 원재료공급자 거래관계자, 발급기관	직접검증	현장확인(수출국내 확인 또는 제3국 확인시는 해당국 관세당국의 협력 필요)
간접검증		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의뢰	
수출국 관세당국	수출자, 원재료공급자 거래관계자, 발급기관	직접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의 현장확인에 협력
		간접검증	서면확인과 현장확인 병행

자료 : 연구자가 분류 작성.

검증절차는 통상 우선 수입국 세관당국이 특혜우대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

70) 관세법상 관련서류의 보관기간도 5년이다. 관세법 제12조 참조. 이는 FTA등 각종 협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된다. 한·EU FTA(앞의 의정서 제23조)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한·미 FTA(제6.17조)는 그 증명서 발급된 날부터 최소 5년 간, 한·아세안 FTA(앞의 부록 1. 제13조)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생산자 및 수출자 또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

71) 법령에서 심사 또는 관세조사란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 경우도 검증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심사 또는 관세조사라는 용어도 유사한 의미이다. FTA관세특례법 제13조 및 관세법 제38조, 제110조 등을 참조.

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다. 이를 통하여도 해당 상품의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단계는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원산지 소명서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다. 3단계는 특혜세율의 적정여부와 원산지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이 체약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 사업장이나 공장을 방문하여 원산지를 검증한다.

상기 표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는 간접검증의 경우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였을 때이고, 직접검증이 경우는 수입국 관세당국의 현장확인에 협력할 따름이다.

라. 원산지 검증의 대상과 내용

원산지 검증이 어떠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가는 각 FTA마다 다를 수 있지만, 원산지 검증은 기본적으로 수입국 세관당국이 특혜관세적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① 서류의 진정성 ② 원산지 판단의 적정성 ③ 원산지증명서 문언의 정확성 ④ 원산지규칙의 일반적인 규정 준수 여부 ⑤ 특혜우대적용의 가부 ⑥ 기타 협약의 필요사항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재료를 취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FTA는 FTA관세특례법, 한국에서 발효한 11개 FTA, 3개 PTA의 관련 규정을 분석해 보면 원산지 검증 대상과 주요 검증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15> 원산지검증 대상과 검증내용

인적대상	물적대상	주요 검증내용
수입자	차별적 관세가 적용된 물품	차별적 관세율 적용요건 전반의 충족여부
수출자(생산자)	수입국에서 검증대상이 된 수출(생산) 물품	수출(생산)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충족여부
원재료공급자	수입국에서 검증대상이 된 수출물품이 원재료 중 자신이 공급한 물품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당해 물품의 거래, 운송, 통관 대행 업체나 취급업체	차별적관세가 적용된 거래, 유통, 운송, 보관, 통관물품	직접운송원칙의 충족여부, 원산지 증명의 적정 여부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한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적정여부

자료 : 연구자가 분류 작성.

3. 원산지 표시 및 확인절차 규정

가.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요

원산지표시는 원산지를 보기 쉽고 견고하게 상품에 표시(인쇄, 주소, 라벨링 등)하는 것을 말하며, 원산지표시제도란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공정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하는 방법과 확인 또는 판별할 수 있도록 실정법으로 규범화 한 것으로서 원산지 규정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는 기업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상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자율적인 방법과 법령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는 의무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주목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제도화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은 최종소비자에게 해당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 물품 구매시에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원산지표시제도의 영향과 효과를 고려한다면 소비자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원산지제도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나. 한국의 원산지표시 법령

관세법 제230조에서는 세관장이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원산지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통관을 불허하거나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16> 관세법령의 원산지표시 규정

구분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	관세청 고시 ⁷²⁾
관세법	230조 231조	-	-	제2장 (원산지표시제도)

자료 : 연구자가 분류 작성.

대외무역법 제33조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72)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장 2015-7, 시행 2015.1.31).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3조의2에서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와 제56조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의 지정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2-17>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표시 규정

구분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 관리규정	수출물품원산지증명 서발급 규정 ⁷³⁾
대외무역법	33조 ⁷⁴⁾ , 33조의2	55조 ⁷⁵⁾ , 56조 57조, 58조, 60조의2	-	제2장

자료: 연구자가 분류 작성.

73)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36호, 시행 2014.8)

74)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75)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원산지표시물품 지정 등)

제3장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적용 현황 분석

제1절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현황

1. 특혜관세 적용대상별 원산지증명

가. FTA 특혜관세와 원산지 증명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는 원산지증명 및 통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로 구분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특정국가임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이며, 원산지확인서류는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뒷받침 하는 모든 서류를 의미한다.

(1)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는 다시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로, 이는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을 말한다. 이 증명서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다. 둘째, 공인원산지신고서(Certificate declaration of origin)로, 이는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하는 원산지 신고를 의미한다. 셋째, 원산지신고서(Declaration of origin)로, 이는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에 관한 상업송장 또는 기타 관련 문서에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가 물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기재한 적절한 진술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원산지증명서(C/O)를 특정 수출선적품의 화물이 특정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되고 생산되고 제조되거나 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국제무역서류로 정의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과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며 그 발급방식에 따라 크게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나눈다.⁷⁶⁾ 자율발급은 법령과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당해물품에

76) 권태휴 (2013), “원산지증명제도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p. 37.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가 신속 편리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부 불성실업자들이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일정한 인적, 물적 시스템을 갖추고 성실성을 인정받은 수출업체에 한하여 원산지 자율증명을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한·EU FTA의 인증수출자제도가 이에 해당하며, 이 방식은 자율발급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인증과 관련된 관세당국의 부담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표 3-1>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종 류	적용국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송품장신고서	EU, EFTA, 페루
연결원산지증명서 (Back to Back Certificate of Origin)	아세안 (역내 경유국에서 발행)

자료 : 연구자가 분류 작성.

기관발급은 법령과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자율발급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공신력이 높아 허위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가 별개로서 진행되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불편과 무역업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며,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의 정확성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없이 수출자가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발행할 경우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표 3-2> FTA 별 원산지증명 방식

구분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미국	한·EU	한·싱가포르
증명 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증명 주체	수출자		* KR: 세관, 상공회의소 * ASEAN: 권한 있는 정부기관	* KR: 세관, 상공회의소 *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수출자	* KR: 세관, 상공회의소 * 싱가포르: 세관
증명 방법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인보이스 신고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정형화된 양식 없음	인보이스 신고	양국간 각자증명
유효 기간	2년	1년	6개월	1년	4년	1년	1년

자료: 김의기 (2013), 「한미FTA 원산지 규정 해설」, 다른 세상.

자율발급은 다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 수입자 또는 수출자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한·미 FTA에서는 생산자도 발급주체에 해당한다.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정보, 공정 및 제조기법이 노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원산지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고 사후 검증 등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거래건마다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여 특혜세율을 신청하는 번거로움과 수출자의 신뢰에만 의존한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자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사후 검증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장점이 있다. 한·미 FTA 출범 후 2년 간(2012.4월~2014년 3월) 총 수입건 37,640건 중에서 수출자가 33,733건(90%)은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⁷⁷⁾ 이는 수출자의 발행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기타 원산지 확인서류

원산지 확인서류의 대표적인 것은 FTA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가 있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은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이며,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국내제조확인서라고 한다⁷⁸⁾

<표 3-3> FTA 별 원산지증명서 서식

FTA명	원산지증명서 서식
한·칠레	지정서식
한·싱가포르	지정서식
한·EFTA	상업서류에 지정문구 기재
한·아세안	지정서식
한·인도	지정서식
한·EU	상업서류에 지정문구 기재
한·페루	지정서식/상업서류에 지정문구 기재
한·미	상업서류·별도서류에 필수항목 기재
한·터키	상업서류에 지정문구 기재

자료 : 연구자가 분류 작성.

- 77) 이경열 (2015),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원,”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p. 37.
- 7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물품공급일부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FTA 이외의 특혜관세와 원산지 증명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제외하고 개발도상국가와 특혜관세 적용과 직접 관련 되는 경우는 ①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입장⁷⁹⁾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허용하는 경우와, ②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서 다른 개발도상국과 협정을 통해 상호 배타적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③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서 다른 선진국의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의 3가지다. ①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이고, ②는 WTO(TNDC)나 UN(GSTP, APTA) 이라는 국제기구에서의 개발도상국간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의 적용이며, ③은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등에 물품을 수출한 경우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일부 품목에 일반 관세율보다 낮거나 무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성격상 ②와 ③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전제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③의 경우 우리나라가 수출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의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입장에서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관세법 제76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최빈개발도상국은 <표 3-4>과 같다.

<표 3-4> 관세법 제76조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대상 최빈개발도상국

지 역	국 가
아시아(13)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몰디브, 키리바티, 사모아,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아프리카(34)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까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감비아, 기네, 기네비소, 레소토,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우간다,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잠비아, 세네갈, 콩고
아메리카(1)	하이티
중 동(1)	예멘

자료 : 연구자가 분류하여 작성

79) 선진국이 아닌 국가를 개발도상국이라 할 때,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를 구분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 1996년 가입하였다. OECD의 가입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소득, 정치적 민주화,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등 3가지로, 우리나라는 이 모두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1인당 국민소득(GNI) 수준으로 선진국 여부를 판단한다. 이 기준에 따라 세계은행은 2001년부터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UNDP는 소득기준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지수, 문맹률도 함께 고려한 민간개발지수를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선진국 여부를 판단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이라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서 충분한 요건을 갖춘 상태다.

<표 3-4>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특혜대상 물품과 특혜세율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⁸⁰⁾ [별표 2]와 같다. 특혜관세율은 모두 무관세(0%)다.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는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 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물품의 원산지는 완전생산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음은 개발도상국간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이다. 먼저 양허세율중 TNDC⁸¹⁾는 1971년 GATT 개발도상국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표 3-5>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이 협정은 개방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모든 개발도상국이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⁸²⁾

<표 3-5> TNDC에 의한 양허세율 적용국가

지 역	국 가
아시아(4)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터키, 한국
아메리카(5)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
중 동(2)	이집트, 이스라엘
아프리카(1)	튀니지

자료 : 연구자가 분류 작성.

<표 3-5>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특혜대상 물품과 특혜관세율은 『세계 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2]와 같다. TNDC는 원산지 규정을 협정에 따로 정하지 않고 참가국이 각자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 기준으로 원산지 규칙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정하여 TNDC 참가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참가국위원회’에 통보하고 적용한다.⁸³⁾ 통보내용은 TNDC 부속서 B에 수록되었다. 수입물품으로서 이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FOB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격에서 원산국의 부가가치가 50%

80) 현행 대통령령 제25894호 (2015.1.1. 시행).

81) TNDC(Protocol Relating to Trade Negotiation among Development Countries).

82) TNDC 제14조.

83) TNDC 부속서 A.

이상이어야 한다. 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는 수입신고시에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GSTP⁸⁴⁾는 UN의 산하기구인 UNCTAD에서 개발도상국간 체결된 협정에 의한 것으로, 동 협정은 1989. 6.11. 발효되었다. 현재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국가는 <표 3-6>과 같다.

<표 3-6> GSTP에 의한 양허세율 적용국가

지 역	국 가
아시아(13)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북한, 태국, 필리핀, 미얀마, 한국
아메리카(15)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쿠바, 니카라과,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파라과이, 우루과이
중 동(3)	이집트, 이란, 이라크
아프리카(14)	짐바브웨, 가나, 탄자니아, 리비아, 기네아, 알제리, 베닌, 수단, 모잠비크, 나이제리아, 카메룬, 모로코, 니지아

자료 : 연구자가 분류 작성.

<표 3-6>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특혜대상 물품과 특혜관세율은 『세계 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⁸⁵⁾ [별표 4]와 같다. 특혜관세율은 무관세는 없고, 0.9% 내지 10%로 다양하다. 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도 수입 신고시에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APTA⁸⁶⁾ 양허관세는 UN 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일부 아시아 개발도상국가간 체결된 협정에 의해 양허된 세율이다. 이 협정은 종전의 방콕협정을 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2006. 9.1. 발효하였다. 현재 이 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라오스,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인데 특히 교역규모가 큰 중국, 인도 등과의 거래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입되는 물품 중 특혜대상 물품과 특혜세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3]과 같다. APTA에 의한 특혜관세를

84)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85) 현행 대통령령 제25894호 (2015.1.1. 시행).

86)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적용받고자 할 때도 수입신고시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물품의 원산지는 완전생산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Preferential Tariff)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1968년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의 결의에 의해 1971.7.1.부터 실시되었다. 과거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수출품들이 선진각국의 GSP 적용으로 수출확대에 큰 도움을 받았으나 1996년 OECD가입 후 그 적용대상이 크게 제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표 3-7>과 같다. 원산지 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은 어느 경우나 적용되고, 세번변경기준은 노르웨이의 경우에, 부가가치기준은 캐나다와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적용된다.

<표 3-7> 우리나라 수출품의 GSP 적용대상

국가명	주요 적용품목	적용관세율
캐나다	의류, 신발류 등을 제외한 약 2,500개 품목 ⁸⁷⁾	공여품목의 3/4은 무관세, 나머지는 낮은 관세율 적용
러시아	02류 내지 09류 등 러시아 정부훈령 제414호에 열거	일반 수입관세율의 75%수준 적용
뉴질랜드	전체 품목 ⁸⁸⁾	일반 수입관세율보다 1~1.5% 낮은 관세율 적용
노르웨이	조제식료품, 농수산물 등에 대해 적용 ⁸⁹⁾	일반 수입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
우크라이나	The Law of Ukraine No. 2097-XII에 규정된 물품	일반 수입관세율의 약 50% 수준의 관세율 적용. 일부품목은 무관세
카자흐스탄	03류 내지 09류 등 카자흐스탄 정부훈령 1389호에 열거	일반 수입관세율의 75%수준 적용

자료 : 각 국의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자가 작성 (2015.10월).

87) 대상품목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cbsa-asfc.gc.ca/general/publications/customs_tariff-e.html 참조.

88) 대상품목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med.govt.nz> 참조.

89) 대상품목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toll.no> 참조.

2. 주요 국가의 원산지 증명⁹⁰⁾

가. 미국

미국은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규정을 모두 관세법 체계에 반영하여 법체계상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제1304조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Code of Federal Regulation 19) Part 134에는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혜원산지 규정을 미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산지 증명과 검증 등 원산지 확인에 관한 절차도 관세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은 협정 그 자체만으로는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별 협정별로 의회에서 별도의 이행법률을 제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 때문이다.

FTA의 시행을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칠레와 처음 FTA를 체결하고 개별 법령을 제정⁹¹⁾했듯이 협정별 이행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내법과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령에 제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쌍방적 특혜규정으로 NAFTA 및 그 이행법,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이 있다. NAFTA 이행법(1993)의 이행규칙 (19CFR 제181.111조 내지 제181.116조)에는 원산지 증명, 원산지확인, 허위증명 등에 대한 제재, 원산지사전심사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행규칙(19 CFR 제102.0 내지 제102.21조)에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나. EU

EU는 원산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관세법에 해당하는 공동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e : CCC) 총 6개 조문 (제22조 ~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2조 내지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2조에서 제26조까지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을 두고, 제27조에서 특혜규정을 두고 있다.

90) 송선욱 (2015),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p. 94-97.

91) 2004년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2010년 폐지)”을 제정하였으나, 2005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면서 모든 FTA를 통합하여 “FTA 관세특례법”을 제정하여 운영.

아울러 관세법 집행규칙 제35조 내지 제65조 및 부록 제9내지 13에서 비특혜 관세를, 제66조 내지 제140조 및 부록 14 내지 22에서 특혜관세규정을 두고 있다.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절차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미국과 같이 특혜와 비특혜의 규정이 통합된 단일 법령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은 유사하나, FTA 이행과 관련해서는 협정 그 자체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협정에서 국내 일반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EU는 Pan-Euro Model의 원산지 규정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 범위에서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고 있어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⁹²⁾ 관세법에는 특혜원산지 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산지 규정 설정 근거만 두고 있다. 관세법 집행규칙은 일반적 특혜원산지에 관하여 3개 분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원산지증명, 속령특혜제도의 원산지증명, 기타 일방적 특혜관세제도의 원산지증명으로 구분된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을 세관과 정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발행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 중 국

중국의 관세제도와 관련된 법령체계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기타 관세 법규 및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관법은 10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장에서 관세제도의 주요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화물의 원산지 조례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에 적용하고 특혜원산지증명에는 적용하지 않는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출입화물의 원산지 확정은 반덤핑과 보조금, 원산지 표시 관리 등을 위해서 적용하며 우대성 무역조치를 위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혜원산지규정에 관련해서는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제조약, 협정의 관련 규정에 근거

92) 권태휴 (2013), “원산지증명제도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p. 43.

하여 별도로 법령을 제정하는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여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화물 원산지관리 방법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특혜원산지에 관하여는 세관이 관련 담당기관이 되어 법을 집행한다.

라. 일본

일본은 기존의 일반특혜관세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관련 원산지 규정을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하고 있고 FTA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은 별도 국내법령 없이 협정을 준용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비특혜와 관련된 원산지규정은 관세법, 수출입거래법, 상공회의소법 등 여러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법규를 준용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규정은 관세잠정조치법, 외국환관리법에 두고 있다. 여기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국 세관이 발급한 것으로 하되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상공회의소 등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세관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주요국 원산지증명 제도의 시사점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특혜와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세법에 포함하여 원산지규정에 대해 독립된 단일입법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EU는 관세동맹이 결성된 이래 Pan-Euro Model의 원산지 규정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 범위에서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고 있어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특혜와 비특혜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고 각 FTA마다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있어 수출입업체는 물론 관세행정 당국에서도 절차와 관리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왜곡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3. 비특혜원산지 증명의 국제적 현황 분석⁹³⁾

가. 발행실적 및 발행기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매년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조사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ICC, 2013), 10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행국가는 <표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독일, 터키, 이탈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UAE), 한국, 프랑스, 영국, 베트남, 스페인 등이다. 미국, 캐나다, 인도와 남아프리카의 자료는 분산된 원산지증명서 발행구조로 인해 파악되지 않았다.

<표 3-8> 10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행국가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중국	3,300,000	3,800,000	3,500,000
독일	1,287,922	1,350,000	1,370,767
UAE	881,862	974,151	823,783 (Dubai only)
터키	9689,450	947,650	1,056,000
이탈리아	700,778	755,407	797,577
한국	752,729	719,006	708,813
프랑스	600,000	540,430	550,000
영국	510,087	456,267	459,928
베트남	390,596	356,902	NC
네덜란드	271,091	249,543	399,417

자료: 송선옥 (2015),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 89.

<표 3-9>는 2013년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에 대한 현황으로, 상업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주무관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 응답 상업회의소의 약 97%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행 권한이 있으며 그들 중 약 46%가 특혜원산지증명서도 발행하고 있다. 24개국에서는 상업회의소가 비특혜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위한 유일한 기관이었으며 약 52개국에서는 정부부서, 세관당국 또는 다

93) 송선옥 (2015), 전계논문, pp. 89-92.

른 발행기관과 그 역할을 공유하고 있다.

<표 3-9> 원산지증명서 발행 기관(2013년 기준)

	상업회의소	세관	정부부처(Ministries)
비특혜원산지증명서	6.70%	23.81%	52.38%
특혜원산지증명서	46.15%	90.48%	80.95%

자료 : 송선욱 (2015), 전계논문, p. 89.

전자원산지증명서 발행과 관련하여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위한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는 상업회의소는 36.47%이며 56.76%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6.76%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관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자 원산지증명서는 상업회의소가 그들의 사업적 요구에 의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한국,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의 전자원산지증명서 처리실적이 매년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 WCO 개정교토협약 및 설문조사 내용 고찰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⁹⁴)는 원산지(Origin)에 대한 내용으로 그 가운데 제 2장 원산지 증명서류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⁹⁵⁾

첫째, 원산지 증명서류의 요구조건과 관련하여 원산지 증명서류는 특혜관세, 일방적으로 또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하여 채택된 경제 또는 무역조치 또는 조건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채택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류의 요구에 관한 규정이 정해질 당시의 경제적 및 상업적 조건의 변경에 비추어 여전히 적절한지 여부를 적어도 매 3년마다 재검토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부정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요구할 수

94) 한국은 2003년 2월 19일에 개정교토협약에 가입 동의하였으나 특별부속서의 경우 A.1, A.2, B.1, B.3, C.1, D.1, D.2, E.2, F.3, G.1, J.2, J.3, J.4, J.5만 수용하였으며 특별부속서 K는 수용하지 않았다.

95) 송선욱 (2015),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p. 98-99.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⁹⁶⁾ 먼저 비특혜원산지 증명 관련 설문조사⁹⁷⁾ 결과도 수입을 위한 비특혜원산지 증명의 요구와 관련하여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의 제2장 권고관행 2와 5에서 수입국 세관당국이 어떤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원산지 증명서류를 요구해야 함을 규정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즉, 수입을 위한 비특혜원산지 증명의 요구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1개 회원국(92%)은 비특혜원산지 증명에 모든 수입에 대해 항상 강행적이지는 않으며 이중 53개 회원국(83%)은 몇가지 특정한 상황의 경우에만 요구하고 있으며 8개 회원국(12%)은 비특혜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단지 응답회원국 중 5개 회원국(8%)만이 모든 수입에 대해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항상 요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응답회원국 중 일부만이 특별부속서에 의해 구속되는 계약당사국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개정교토협약의 권고관행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비특혜원산지 증명을 항상 요구하는 5개 회원국(8%)의 대다수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다. 이들 회원국들은 원산지증명서나 당국에 의해 증명된 원산지신고서를 요구한다. 그들 가운데 2개 회원국은 수출업자에 의한 상업송장 상의 원산지신고를 수락한다고 언급하였다.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2개 회원국이 관세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하였고 다른 2개 회원국은 관세 목적을 위해서라고 언급하였으나 그 증명이 관세 징수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지적인 다른 이유들은 소비자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위험관리 프로파일링, 쿼터의 적용이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요구되는 비특혜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WTO 원산지 협약의 Article 1의 224)에서 제공되고 있는 바와 같은 비특혜원산지 규정의 범위, 즉,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시, 수량제한, 관세할당, 무역통계, 정부조달, 의심되는 사기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96) Revised Kyoto Convention, Special Annex K, Chapter 2, 2. Standard, 4. Recommended Practice, 5. Recommended Practice.

97) 2013년 6월에 열린 121/122회기에서 WCO 총회에서 세입 관련 행동계획의 2번째 국면에 대해 서명하면서 그 내용 중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회원국의 능력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지침 사항의 개발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WCO 사무국은 특혜원산지 뿐만 아니라 비특혜원산지 분야에서 원산지 증명관련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비특혜원산지 증명에 대한 요구사항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2013년 WCO 모든 회원국에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답변이 66개 회원국으로부터 들어왔으며 설문지는 비교가능성을 위해 2011년에 WCO에서 이행한 이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둘째, 원산지증명서 발행 기관과 관련하여 본 장을 수락하는 계약당사국은 수락통보서에 또는 그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당국 또는 기관은 그들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위한 신청서 또는 관리용 사본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⁹⁸⁾ WCO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과 관련하여 46개 회원국(70%)이 상업회의소를 표시하여 상업회의소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주요한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3개 회원국(20%)은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세관당국이 발행하는 것으로 언급하였고 9개 회원국(14%)은 무역부가 발행자로 되어있었다. 발행자로서 다른 부서나 정부기관으로 지적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형태가 산업, 농업이나 수산업의 책임이 있는 기관이었으며 몇몇 회원국에서는 제조업자나 수출업자의 협회와 같은 민간 기구가 비특혜원산지 증명을 발행하도록 수권되었다. 비록 상업회의소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주 발행기관이지만 7개 회원국(11%)의 경우 상업회의소가 세관이나 다른 관련 정부기관들과 발행 권한을 공유하고 있었다.

셋째, 원산지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류 수락과 관련하여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다만, 이 경우의 수입은 비상용의 성격이고 수입 합계액이 미화 500불 이상인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합계액이 미화 300불 이상인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용의 탁송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원산지신고서(declaration of origin)를 수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⁹⁹⁾ 비특혜원산지증명의 형태와 관련한 설문에도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의 2장에서 정의한 원산지증명서의 3가지 형태, 즉,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공인원산지신고서(certified declaration of origin), 원산지신고서(declaration of origin)를 대상으로 복수선택 설문조사한 결과 원산지증명서가 지배적이었다. 51개 회원국(77%)이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표시되었고 공인원산지신고서는 12개 회원국(18%)에서 이용되었으며 원산지신고서는 11개 회원국(16%)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원산지증명 관련 제재와 관련하여 원산지 증명서류를 획득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였던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⁰⁾

98) Revised Kyoto Convention, Special Annex K, Chapter 2, 9. Standard, 11. Recommended Practice.

99) Revised Kyoto Convention, Special Annex K, Chapter 2, 12. Recommended Practice.

100) Revised Kyoto Convention, Special Annex K, Chapter 2, 13. Standard.

제2절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검증

1. 원산지 검증현황 분석¹⁰¹⁾

가. 수입물품 검증현황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되면서 협정관세를 적용한 물품에 대한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별 검증검증 현황은 아래 <표 3-10>과 같다.

<표 3-10> 협정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한국의 원산지검증 실시 현황

(단위: 검증과 위반은 업체수, 적발률은 %)

구분	협정 대상국	2011		2012		2013		2014		4년합계	
		검증	위반 적발률	검증	위반 적발률	검증	위반 적발률	검증	위반 적발률	검증	위반 적발률
FTA	EFTA	7	6	35	25	31	17	18	9	91	57
			85.7				71.4				54.8
	아세안	35	23	101	46	138	24	90	41	364	134
			65.7				45.5				17.4
	EU	19	15	58	48	242	153	592	280	911	496
			78.9				82.8				63.2
	칠레	1	1	20	9	2	2	3	0	26	12
			100				45.0				100
	미국	0	0	1	1	60	51	119	53	180	105
			0				100				85.0
	싱가포르	0	0	2	1	2	1	0	0	4	2
			0				50.0				50.0
	인도	10	8	60	48	1	1	3	3	74	60
			80.0				80.0				100
연도별 합계	72	53	277	178	474	249	825	386	1,650	866	
		73.6				64.3				52.5	

자료 : 정재완 (2015),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과 원산지관련 행정심판사례의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 10.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한국 관세당국이 위험관리기법(R/M)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에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해 실시한 것이다. 이

101) 정재완 (2015),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과 원산지관련 행정심판사례의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p. 8-10.

가운데는 칠레와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직접검증 방법(문서에 의한 확인과 현장 확인 병행)이 적용되었고, EFTA와 EU는 간접검증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아세안과 인도의 경우는 양자가 혼합된 방식으로 검증이 실시되었다.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한·EU와 한·미 FTA의 검증대상 업체 수가 2014년에 급증하였다. 물론 협정 상대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발효된 지 5년 이내인 한·EU와 한·미 FTA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검증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FTA에 의한 수입의 증가에도 요인이 있지만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방식으로 인해 위험요인이 높아진 원인도 클 것이다. 둘째, 검증대상 건수가 많은 한·아세안, 한·미, 한·EU FTA의 적발률이 45%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관세당국의 위험관리 기법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FTA의 활용이 기업체의 입장에서 아직 성공적으로 국제무역 시스템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검증업체 대비 적발률이 4년 평균으로 보아 수출물품에 비해 2.6배 수준으로 높다. 이는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대상은 FTA 협정상대국이 선별한 반면,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대상은 수입국인 한국 관세당국이 선별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치는 적어도 한국 관세당국의 검증업무 효율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셋째, 수출에 비해 높은 적발률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2011년의 경우 적발률은 73.6%에 달하였으나 해마다 낮아져 2014년에는 46.8%로 떨어졌다. 이것은 <표3-11>의 수출물품 검증의 경우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와는 반대 현상이다. 이는 경험이 쌓여 기업체는 FTA 활용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관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검증결과에 따라 업체가 새로운 대응 방식을 발전시켜 감으로서 검증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나. 수출물품 검증현황

한국 관세당국에 의한 원산지검증은 2000년 이전에도 일반적인 납세에 대한 심사의 일부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차별적인 관세율 적용이 미미하였던 관계로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2000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해 GSP가 공여되고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된 뒤 FTA가 늘어나면서 원산지검증도 관심의 대상이 되긴 하였으나 실제 검증건수는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

고, 2011년 7월 한·EU FTA와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원산지검증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해마다 그 대상과 검증결과에 따른 관세추징액이 크게 증가되었다. 먼저 수출물품에 대한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현황은 <표3-11>과 같다.

<표 3-11> 수출물품에 대한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

(단위: 검증과 위반은 업체수, 적발률은 %)

구분		2011		2012		2013		2014		4년합계	
	협정 대상국	검증	위반	검증	위반	검증	위반	검증	위반	검증	위반
			적발률		적발률		적발률		적발률		적발률
FTA	EFTA	21	3	9	2	8	3	9	2	47	10
			14.3				22.2				37.5
	아세안	18	2	27	0	44	5	26	2	115	9
			11.1				0				11.4
	EU	0	0	142	26	190	36	249	73	581	135
			0				18.3				18.9
	터키	0	0	0	0	0	0	1	0	1	0
			0				0				0
	미국	0	0	0	0	0	0	13	0	13	0
			0				0				0
PTA	APTA	0	0	0	0	0	0	4	0	4	0
			0				0				0
연도별 합계		39	5	178	28	242	44	302	77	761	154
			12.8				15.7				18.2

자료 : 정재완(2015),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과 원산지과련 행정심판사례의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 8.

<표 3-11>로 정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FTA 상대국의 검증요청에 따라(간접검증) 한국 관세당국이 실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한·미 FTA의 경우 미국세관공무원들이 한국에서 직접검증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관세당국이 검증에 협력한 것만 집계되었다. <표 3-11>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보인다. 첫째, 다른 FTA에 비해 한·EU FTA를 적용받은 수출물품의 검증이 최근 4년간 해마다 크게 증가해 왔다는 점이다. 정확하게 그 전모가 집계된 않으나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이후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검증에서 문제가 발생한 수출업체 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EU쪽으로 수출한 업체들의 위반발생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셋째, 검증결과 검증업체 대비 위반업체가 적발된 비율 즉, 적발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도 특히 EU쪽으로 수출한 업체들의 경우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최근 4년간 EU 국가들의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검증효율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원산지검증에서 문제가 발생한 수출업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 협정별 원산지 검증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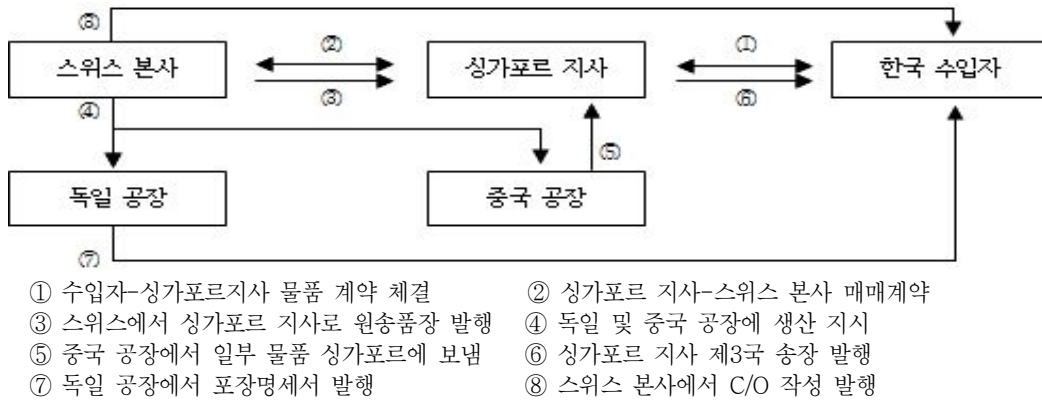
가. 한·EU FTA의 검증 특성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이탈리아, 체코 등의 국가는 원산지 위반의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주로 검증을 요청하며, 무작위(랜덤)로 검증을 요청하기도 한다. 검증대상은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직물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물품인 공산품이다. 한·EU FTA에서 눈에 띄는 점은 협정관세를 사후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으려 하는 기업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 집중적인 검증을 요청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동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때문에 특혜관세가 적용보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6,000유로 이상을 특혜수출 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비인증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하거나, 제3국의 중개 업자가 한국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하여 C/O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복잡한 다국적 거래에서는 인증수출자 자격 위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거래 유형은 독일 공장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이용하여 스위스 본사가 C/O를 발급하고 한·EU FTA 특혜관세를 신청한 것으로, 이는 권한 없이 발급한 C/O로 분류되어 특혜관세가 배제된다.

<그림 1> 다국적 거래의 인증수출자 위반 유형도



나. 한·아세안 FTA의 검증 특성

ASEAN 10개국 중 수출검증을 요청한 적이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최근 2년간 인도네시아와태국만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국가는 기계, 화학제품, 철강 등 공산품에 대해 주로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검증 요청 비율이 높다. ASEAN 국가의 경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요청보다는 형식적인 오류에 대한 검증 요청이 많으므로 사소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ASEAN 세관에서는 특혜관세 신청 시 C/O-Invoice, B/L 등 무역서류-현품간의 비교를 통하여 품목, 수량, 수출입자 주소 등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검증을 요청하거나, 특혜관세를 배제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특정국가의 경우 선적일 이전에 발급된 C/O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증을 진행하여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고 바로 잡은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국가 간의 문화와 절차상 차이로 불필요한 검증 요청이나 통관 애로가 발생하는 때에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한·미 FTA의 검증 특성

한·미 FTA 검증은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서면검증부터 살펴보면, 수출자가 검증 통지를 직접 받는 다른 협정과 달리 한·미 FTA에는

수입자의 주선을 통해 수출자에게 자료제출이 요구되는 특이점이 있다. 수입자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전달받은 수출업체는 당황하지 말고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자료준비 기간이 제출기한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때에는 미리 제출 연기신청을 꼭 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를 통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비밀자료는 미국 세관에 직접제출하면 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자료를 제출받은 미국 세관은 이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며, 만약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비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특혜관세 혜택을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20일)가 부여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주어진 기간 안에 요청자료를 보완하지 못하면 특혜관세 배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경우에도 정산(납부결정)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다시 세관에 이의제기(Appeal)를 할 수 있다(관세사 등이 미국세관 방문 또는 전화로 이의제기). 이때 이의제기가 수용되면 수정된 이행통지서를 발행한다. 만약 최종 확정하고 정산에 들어간 경우라면 정산 후 180일 이내에 수입신고 세관에 대한 이의제기(보통 Appeal 또는 Protest라고 함.)가 가능하다. 정산 후 이의제기 과정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제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유사하며, 행정구제 절차를 통해서도 수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같이 美 세관은 수입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단계별로 다양한 구제제도를 운영하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억울한 원산지 불인정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검증은 서면검증과 많은 부분에서는 유사 하나, 특정 수입 건이 아닌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장검증의 결과, 특정 회사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면 해당 수입신고뿐 아니라 과거의 수입신고건, 더 나아가 검증대상 물품이 미국 내 다른 수입자에게 수출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확대하기도 하므로 이를 미리 알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라. 각 FTA의 공통적인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협정에서 공통으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검증과 기존 관세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련 당사자가 수입자에서 수출자, 수출국 정부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과 입증책임이 수출업체에 있다는 점이다. 입증책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12> 원산지검증 입증책임과 추정가능 여부

구 분	기존 무역환경	FTA 무역환경
입증책임	세관	검증대상 업체
자료제출 못하는 경우	추정불가 (추가 세액 부담 없음)	추정가능 (특혜세율 배제)

자료: 연구자가 분류 작성.

이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이 수출입업체로 옮겨감에 따라 자료보관이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한·미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자료를 사전에 확보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정보는 수출자가 보유하는 반면, 원산지 불충족 결정 시 추정 책임은 수입자에 귀결된다. 즉 관세 등 세금 추정 대상자는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이므로 세금 추정 후 귀책사유에 따라 수출입자 간 구상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수출자가 검증에 성실히 응할 유인이 필요해졌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지 수출자/생산자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설정 무역계약서에 원산지증빙자료 제공 및 귀책 사유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 수출자 소재 파악을 비롯한 지속적인 수출자 관리 등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수출국 정부가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은 회신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내 미회신으로 인한 추정도 종종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관세청에서는 수입자의 과실과 무관한 억울한 추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대국의 회신이 늦어지고 있는 경우 이를 수입자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이러한 때에는 수출자 등과 협력하여 적기에 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및 확인

1. 주요 국가의 원산지표시¹⁰²⁾

가. EU의 원산지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80년대 유럽 국가로 알려졌으나, 초기 유럽연합의 성립과정에서부터 역내 국가 간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면서 EU 지역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최근까지 상당히 약화된 모습으로 운영되었다. EU의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원산지 표시제도 등의 금지가 조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으나, EU 사법부는 이러한 제도 모두 적어도 잠재적으로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EU 지역에서는 물품의 질이나 특성이 (국가 단위가 아니라) 특정한 지리적 영역과 관계된 경우나 전통적인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경우, 포장이나 라벨 등에 따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만 원산지나 품질 표시를 허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EU의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Regulation (EC) No 1223/ 2009에 따라 EU 차원에서 수입 화장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이는 각 회원국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다. 섬유제품의 라벨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Regulation No 1007/2011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도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2013년 2월 13일 EU는 ‘PRODUCT SAFETY AND MARKET SURVEILLANCE PACKAGE’를 발표하여 식품류가 아닌 소비재(non-food consumer products)에 대하여 공급망 추적을 통한 제품안전과 위해물품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EU의 ‘PRODUCT SAFETY AND MARKET SURVEILLANCE PACKAGE’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EU의 원산지 표시제도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102) 김영환 (2014), “특혜비특혜 원산지규정의 상관관계와 원산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II),” 「관세와 무역」, 제46권 제491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p. 41-46.

나.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미국에서 원산지표시는 Tariff Act of 1890에 따라 1891년부터 의무화하였으며 현재도 매우 복잡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일반 물품, 섬유 및 의류제품, NAFTA 물품에 대한 규정으로 나누어진다.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으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활동이 이루어진 물품의 원산지 판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별도의 품목별 기준 없이 사례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미국 법원과 관세청의 판정사례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제조과정에서 구별되는 명칭, 특성, 또는 용도를 갖는 새롭고 다른 물품(a new and different article, having a distinctive name, character, or use)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국가가 어디인지, 제조과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러한 원칙이 판례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까지 소급된다.

다. 캐나다의 원산지 표시제도

캐나다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미국과 유사하게 NAFTA 국가로부터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와 그 외 국가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로 분리되어 있다. NAFTA 국가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와 NAFTA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표시대상 물품은 동일하지만, 전자가 원산지 결정기준, 표시 방법, 언어, 적정성 확인 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명료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으며 더욱 유연하다. 이러한 차별은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에서 NAFTA 국가로부터 수입 물품과 그 외 국가로부터 수입 물품에 대한 차별과 유사하다. 캐나다의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은 예술품·기념물 등 표시가 곤란한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미국과 달리 개인용·가정용 물품, 의류 등 6개 품목군으로 나누어 예시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NAFTA Marking Rules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비슷하나 같지는 않다.

2. 한국의 원산지표시 현황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세관에서 통관과정에서 최초로 수입신고서를 통해 원산지를 신고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지정한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현품에 신고서와 동일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관세법¹⁰³⁾에도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대외무역법 제36조¹⁰⁴⁾과 대외무역법시행령¹⁰⁵⁾에 비특혜원산지의 증명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의 하위규정에 증명서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에서 세관장의 필요에 의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세관에서 물품의 통관시 신고인인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내용과 현품의 원산지 표시 내용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정도이지 원산지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최근 5년간 관세청의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

103)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전문개정 2010.12.30.].

104) 대외무역법 제36조(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그 물품등의 원산지 국가 또는 물품등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 대외무역법 시행령 65조 (수입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2. 그 물품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3. 제1호의 국가 또는 제2호의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을 보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은 원산지의 근본적 하자는 물론 정상적인 신고 이후의 사후관리도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는 수입통관 이후 원산지 둔갑행위가 날로 지능화·교묘화 되고 있어 유통단계에서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강화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표 3-13>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표시 단속실적(단계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통관단계(건)	8,965	7,250	6,272	5,827	5,723
유통단계(건)	855	843	759	749	770

자료 : 관세청 제공.

원산지표시와 관련되어 원산지를 심사하는 것은 GATT 규정 등에 따른 무역마찰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GATT 제9조는 최혜국대우(MFN), 각 국이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시 원산지표시의무가 수출국의 산업에 부담이 되지 않고 소비자가 상품의 기망·착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부과해야 하며, 원산지표시 의무가 물품에 현저한 손상이나 실질적인 가치의 감소 또는 표시비용의 부적정한 증가 없이 실행이 가능토록 하여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산업적인 내용이다.

이는 통관과정에서 원산지표시대상품품의 원산지 판정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국 관세당국의 통관절차를 제한하는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원산지표시제도가 비관세장벽이라 칭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및 해외 대다수의 나라가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물품에만 적용하고 수출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원산지표시 규정이 수입제한장벽으로써 영향력이 있다는 응답은 9.5%로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현재 수입제한장벽으로써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제도가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기업에게도 필요한 제도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글로벌화 된 무역환경에서 디자인·핵심부품은 브랜드 원산지 국가가 가지고 있고 제품생산은 해외도처에서 생산하고 있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예를 들어 긍정적 원산지 조합¹⁰⁶⁾ 등이 동 내용을 현품에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구매권 보호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

다면 원산지표시와 관련되어 그간에 비특혜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영역의 적용에 있어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의 수입시 현재 FTA 특혜관세 적용에 준하여 원산지 결정에 대한 심사부터 원산지증명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후 검증절차도 적용하는 위험관리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3-14>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단속 적발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단속업체(개)	1,288	1,275	1,549	1,186	1,530	1,349
위반업체(개)	771	714	754	681	683	705
금액(억원)	949	983	5,004	9,668	3,828	8,665

자료: 관세청 제공.

최근 2년간의 세관의 단속실적을 보아도 주로 원산지 미표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산 물품이 대부분이다. 이는 경쟁력 있는 선진국 브랜드들은 오히려 원산지표시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15> 2013~2014년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구 분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계
건수	98	136	63	582	346	1,225
(비율%)	(8)	(11)	(5)	(48)	(28)	(100)

자료: 관세청 제공.

106) 일본에서 생산된 독일브랜드 오디오(각 분야마다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연결되어 생산된 경우).

3.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 및 심사

가. FTA 특혜관세 심사 및 주요 오류 내역

수입신고서와 함께 세관에서는 특혜관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먼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협정별로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ASEAN; 200불)이하의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간이하게 협정관세 신청을 허용한다. 그리고 직접운송 원칙과 관련하여 단순 환적(일시장치)에 해당시 일차적으로 운송회사가 발행한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 등)에 의해 최초 출항지와 최종 목적국(한국)이 계약상대국인지 확인하고 적출국이 계약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컨테이너 봉인 번호 등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운송된 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는지 또는 단순경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입증서류(예 : 경유국 세관당국이 발행한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류 또는 보관증, 단순경유 원산지증명서 등)를 추가로 징구한다. 그리고 분할 수입시에는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동일선적분에 대하여 B/L 분할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1회 선적분(B/L확인결과 동일편명)임에도 B/L번호만 다를 경우에는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 HS(품목분류 코드)는 수입국(한국)의 HS를 기재하고 품명(description)과 세번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다.

주요 오류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1천불 이상의 물품을 소액물품처럼 원산지증명서가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특혜관세를 신청함으로써 FTA특례법 제10조(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누락한 경우, NFTA(북미자유협정) 원산지증명서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경우, 각 FTA 협정의 적용배제 품목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로서 인정할 수 없는 제3국 발행 송장에 의한 협정세율 적용 등이 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신고서상의 수량과 증량이 서로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C/O)에 기재된 수량과 증량을 초과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 경우, 한·EU FTA 특혜세율 신청시 상업서류가 아닌 별도의 서류에 물품명의 기술 없이 인보이스 번호와 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류로 협정관세를 적용한 경우 등도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이다.

나. FTA별 주요 확인 사항

먼저 한·칠레 FTA는 양국간 통일증명서식을 사용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미기재시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한·싱가포르 FTA는 세관(SINGAPORE CUSTOMS)발급으로 양국이 지정한 별도서식의 형식적 요건 (예, 발급번호 : 6자리 숫자 기재)을 확인한다. 한·EFTA FTA는 당사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자(자율발급)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동 상업서류는 반드시 ‘수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체약 당사국에서 발행(인증번호가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서명 생략가능)되어야 한다. 제3국 송장이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 3-16> 제3국 송장 비인정 사례

- ①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제3국인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 ②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체약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 ③ 백지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수출자가 기재하고, 제3국 발행 송장,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의 참조번호 기재
- ④ 백지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만을 수출자가 작성하며 물품에 대한 설명이 신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자료 : 연구자가 분류 작성.

한·아세안 FTA는 발급주체가 지정기관 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가 수출물품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의 것으로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후에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C/O)상에는 소급발급 (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하며 이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다. 한·인도 CEPA 도 선적일로부터 7일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비고란에 상기와 같이 “ISSUED RETROSPE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1년 이내에 소급 발급이 가능하다. 한·EU FTA의 수출자 자율발급의 서식은 송품장 신고방식(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 기재) 으로 그 형식은 아래와 같다

<표 3-17> 송품장 신고방식의 문안 작성 요령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③,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④.

- *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해야 함
- * ①란은 ‘customs authorization No’없이 ‘인증번호’만 기재해도 인정
- * ③란은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 ④란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 * 원산지신고문안이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자료 : 연구자가 협정에서 추출하여 작성.

한·EU FTA의 심사시에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혼재된 경우, 비원산지 제품을 제외한 원산지제품의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일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되며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협정세율 적용(예. 독일 수출자가 원산지가 영국인 물품을 수출)이 가능하며, 원산지신고서 문안 기재시 “EU”로 표기하는 것이 인정된다.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주체가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로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하나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 제품인 것과 직접운송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협정(협정문 제6.15조 2항)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 3-18>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 항목

-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자
-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12개월초과불가)

자료: 연구자가 규정에서 추출하여 작성.

제4장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발전방향

제1절 쟁송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1. 원산지표시 쟁송사례

대부분의 원두커피는 원산지를 자메이카와 케냐 등 생두 생산국을 사용하지 않고 스타벅스, 커피 빈과 같은 커피 전문점 등이 대부분 로스팅을 한 국가인 미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표기해 왔다. 일종의 관행인 것에 대하여 관세청이 처음으로 법적 잣대를 들이댔다. 아무리 좋은 배합 기술과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원재료인 커피원두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원두커피 질은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과 원두 커피는 매년 기후와 토양에 따라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국가 원두가 좋다고 만 할 수 없고 원두 커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두를 어떻게 로스팅 하느냐가 중요하므로 로스팅을 한 국가가 원산지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 수입커피의 원산지 표시가 ‘생산국’이 아닌 ‘가공국(로스팅국)’을 기준으로 표기되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즉 커피를 재배하고 수확한 ‘생산국’이 아니라 ‘로스팅(볶음)’이나 ‘블렌딩(혼합)’ 등의 공정을 거친 ‘가공국’이 해당 커피의 원산지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에서 생두(커피콩)를 수입해온 뒤 한국에서 볶는다면 해당 커피의 원산지는 한국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정을 한 정부기관의 논리는 “커피의 고유의 향과 맛은 커피 생두가 아니라 볶음공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볶음공정이 진행된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업체들이 값싼 베트남 커피와 고급 케냐산 커피를 수입한 뒤 볶음 공정을 같은 국가에서 했다고 값을 같게 측정해버려도 소비자들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수입 커피의 주요 세율은 생두는 2%, 원두는 8%의 기본세율이었으나, FTA가 발효되면 대부분 수입 생두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원두는 즉시 혹은 5년 동안 단계별로 철폐된다. 그리고 볶은 커피(HS 0901.21, 0901.22)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일정수준의 부가가치(한·ASEAN 45%, 한·싱가포르 55%) 충족, Roasting 공정 인정(한·미), Roasting 공정 불인정

(한·EU, 한·인도, 한·칠레, 한·페루, 한·터키) 등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표 4-1> 주요 국가의 수입커피 관세율 FTA 발효 전·후 비교

품목	FTA 前 세율(%)	칠레	미국	페루	ASEAN
생두	2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원두	8	5년 단계시행	5년 단계시행	5년째 철폐	즉시철폐

자료 : 관세청 제공.

이에 따라 새롭게 바뀐 ‘로스팅 커피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통해 국내 커피수입 및 소비구조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산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로스팅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에 따라 오히려 해외브랜드 중심의 커피 전문점과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을 주로 하는 유통업계의 입장이 강화된 부분이 있기에, FTA를 통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기 어려운 측면 등도 고려해 원산지 표시제도 등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2. 원산검증 쟁송사례

본 연구자는 세관에서 그간 원산지 검증결과 원산지 검증담당자와 관세청 검증업무 담당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그간 원산지 검증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정별 검증의 사례 등을 통해 우리의 수출입업체나 관세당국이 유의할 점과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 A는 스위스에 소재하는 업체로부터 2011.8.9.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스위스산’으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한·EFTA FTA 협정관세 0%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그 후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쟁점 물품에 대한 해외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스위스 관세당국이 협정상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결과를 정해진 회신 기간인 10개월¹⁰⁷⁾

이내에 회신하지 않아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과 처분하였다.

나. 쟁점108)

원산지가 ‘스위스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의 주체인 한국의 관세당국이 스위스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이 FTA에서 정한 회신기한(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 예외적으로 동 기간을 경과해도 되도록 규정한 한·EFTA FTA 협정 제24조 제7항 단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다. 심판기관의 판단109)

조세심판원은 “수입국 관세당국이수출국 관세당국에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 관세당국인 처분청이 보정된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 원산지검증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검증을 요청했으나 법정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유효한 인증수출자 번호라는 검증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으며, 그 후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재인용하며, “쟁점 물품은원산지가 스위스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판정에 관한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 “회신기간을 경과한 점” 등을 항소기각의(서울 고법 2012누25851 2014,1월 판결) 주요 이유로 들었다.

107) 한·EU와 한·EFTA FTA의 경우 회신기한은 조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월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20조 참조).

108) 쟁점 중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실체적인 문제는 논외로 한다.

109) 조심2014판0170, 2014.08.21 결정.

라. 시사점

원산지 검증과정 및 사례에서 보면 서명권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직접 자필서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대리 서명하거나 원산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통관고유번호를 원산지인증번호란에 기재하는 등 비록 형식적이지만 기본적인 소양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 또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국내 공급자로부터 관련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중대한 하자가 적발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FTA 원산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추상적이어서 발생하는 혼란이다. 한 예로 스위스와 국제분쟁에서 보듯이 검증결과 통보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자세하게 제공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협정에 의하면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나 실제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원재료 내역서나 제조공정서와 같은 기업정보도 포함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원산지 검증이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절차이므로 수입국은 협약에 따라 조사권을 위임받은 수출국의 조사결과에 승복해야 하며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상세정보까지 요청하는 것은 국제관행상 무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발된 사실 관계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자세한 정보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출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수입국에서 법원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여 실체적 요건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법원소송이나 인력부족 등으로 수출국이 회신을 지연하거나 나중에 조사결과를 번복하게 되면 수입국 당국이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조사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특혜관세를 취소해야 하지만 수출국이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기한연장을 요청하면 관세협력 차원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더욱이 수출국의 법원소송이 관세부과제척기간¹¹⁰⁾ 이상으로 장기간 진행되거나 수출국 조사결과가 법원에서 번복될 경우 문제가 된다. 물론 일단 특혜관세를 취소하고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겠으나 수출국과 수입국 법원의 재판결과가 상충할 경우 사법 관할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110)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가격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납부해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5년이 적용된다(관세법 제21조 1항).

한 예로 품목분류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정서 제28조 제2항에 따라 수입국 관할당국과 수입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수입국 법령에 따라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간접검증 방식에서는, 특히 사법권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의 권한배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협정에 명기된 ‘예외적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불확실하다. 예외적 상황은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생소한 개념으로 천연재해나 공공안전 등 상식적으로 볼 때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지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또한 수출자의 과실에 대하여 수입자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협약에 규정된 바가 없다. 한 예로 스위스 금괴사건에서 보듯이 수출자가 합법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하여 수입신고를 한 성실한 납세의무자에게 수출자의 태만을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면 납득이 어려운 처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신고서에 해당 물품을 ‘자세하고 충분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요건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품을 설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입국이 수출국 원산지 조사에 참관(present)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과연 단순한 관찰(observe)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질문 등 자료 접근권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제2절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문제점

1. 원산지 절차적 규정의 복잡성 및 준수율 저조¹¹¹⁾

가. 원산지검증 결과 분석

FTA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수년간 원산지검증도 크게 증가하였고 FTA 협정 세율 적용 배제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먼저 관세당국에서 시행된 검증결과를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으로 구분하여 주요 적발 유형 및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FTA 상대국의 검증요청에 따라 한국 관세당국이 실시한 것으로 <표 4-2>와 같다. 이 표에서 한·미 FTA의 경우 미국 관세당국이 한국 현지에서 직접검증을 실시하고 한국 관세당국이 검증에 협력한 것은 포함되었지만 그 이외의 것은 집계에서 제외되었다.

<표 4-2>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결과 적발된 원산지 규정 위반 사유

(단위 : 업체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중(%)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1	4	10	41	56	36.4
인증수출자 규정위반	0	13	10	19	42	27.3
원산지증명서 발행주체 하자	1	9	11	9	30	19.5
서류보관의무 위반	1	2	2	3	8	5.2
서명, 인장, 발급번호 오류	1	0	2	0	3	1.9
원산지증명서변조	1	0	1	2	4	2.6
기 타	0	0	8	3	11	7.1
연도별 합계	5	28	44	77	154	100

자료: 정재완 (2015),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과 원산지관련 행정심판사례의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 9.

111) 정재완 (2015),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과 원산지관련 행정심판사례의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p. 11-13.

<표 4-2>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결과를 보면 인증수출자 규정위반이나 원산지증명서 발행주체 하자가 비교적 많은데 이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출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규정한·EU FTA에서만 필수요건으로 규정된 것으로,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보는 수출업체가 상당하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시행 초기에 자율증명에 의한 원산지 증명 방식이 수출업자에게 아직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서류보관의무 위반이나 서명, 인장, 발급번호 오류 등이 위반이유가 된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는 각종 협정에서 수출입업자에게 의무화된 원산지 증명서류의 보관 규정이 까다롭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 FTA협정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한국 관세당국이 각종 수출입정보의 분석이나 정보관리에 의한 선별 또는 위험관리기법(R/M)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에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해 실시한 것이다.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되면서 협정관세를 적용한 물품에 대한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결과 적발된 원산지규정 위반사유를 보면 <표 4-3>과 같다.

한국 관세당국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결과 원산지위반이 가장 빈번한 것은 전체의 46.2%를 차지하는 원산지증명서류 요건을 위반한 것이었다. 다음이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오류와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그리고 자료보관 의무 위반 등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증명서류요건 위반과 품목분류와 관세율 적용오류, 그리고 자료보관 의무 위반은 협정이 발효된 초기 단계에서 복잡한 협정관세 적용의 절차나 적용방법의 미숙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EU나 EFTA 등은 이미 오랜 시간 지역경제통합체 운영을 통해 지역에 소재하는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차별적인 관세율 운영에 익숙하겠지만, 한국의 무역업체들은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에 관심을 가진 이유로 초기단계에서 오류가 적지 않게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은 착오들은 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발률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각 FTA 협정별로 상이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규정들을 표준화하고 통일해 나갈 필요도 있다. <표 4-3>에서 실체적 요건의 위반이라 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은 업체

의 적발비중은 16.9%에 불과하다.

<표 4-3> 협정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검증 결과 적발된 위반 사유

(단위: 업체수는 개, 추정액은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4년 합계	비중 (%)	업체당 추정액
품목분류/관세율 적용 오류	업체수	6	74	59	81	220	21.2	53.8
	추정액	742	1,664	5,232	4,208	11,846	8.0	
증명서류요건 위반	업체수	25	43	145	267	480	46.2	126.6
	추정액	606	3,583	14,173	42,425	60,787	41.0	
직접운송요건 위반	업체수	3	5	8	4	20	1.9	446.6
	추정액	246	800	4968	2917	8931	6.0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업체수	2	25	92	57	176	16.9	249.6
	추정액	103	1,625	17,874	24,336	43,938	29.6	
자료보관 의무 위반, 자료제출 거부 등	업체수	17	68	26	33	144	13.8	159.1
	추정액	13,095	4,406	3,182	2,228	22,911	15.4	
년도별 합계	업체수	53	215	330	442	1040	100	142.7
	추정액	14,792	12,078	45,429	76,144	148,413	100	

자료: 정재완 (2015),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과 원산지관련 행정심판사례의 연구,” 「관세학 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 11.

(3) PTA¹¹²⁾와 GSP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2000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물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모두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물품에 대한 차별적인 관세특혜의 부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에 대한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 적발된 위반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특혜관세의 공통점이 있지만 원산지규정 위반사유도 추출해 보면 FTA나 PTA 및 GSP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업체당 추정액을 보면 원산지제도의 실제적 규정이라 할 수 있는 품목분류와 관세율 적용오류, 그리고 원산지결

112) 한국이 체결하고 있는 PTA은 3개 (TNDC, APTA, GSTP).

정기준 위반의 경우에 증명서류 요건 및 자료보관 의무 위반 등의 절차적 규정의 위반보다는 상대적으로 추정액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비교적 적은 추정액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 및 서류 보관 등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감내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비교적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4> PTA 및 GSP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검증 결과 적발된 위반 사유

(단위: 업체수는 개, 추정액은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4년 합계	비중 (%)	업체당 추정액
품목분류/관세율적 용 오류	업체수	22	13	5	5	45	35.7	19.7
	추정액	157	212	245	271	885	3.5	
증명서류요건 위반	업체수	7	0	1	4	12	9.5	499.3
	추정액	988	0	1	4	12	9.5	
직접운송요건 위반	업체수	2	0	33	3	38	30.2	404.1
	추정액	8	0	14,563	782	15,353	60.9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업체수	1	20	0	2	23	18.3	151.8
	추정액	10	3470	0	12	3,492	13.8	
자료보관 의무 위반, 자료제출 거부 등	업체수	2	5	1	0	8	6.3	238.1
	추정액	413	159	1333	0	1,905	7.6	
년도별 합계	업체수	34	38	40	14	126	100	200.2
	추정액	1,576	3,842	17,054	2,756	25,227	100	

자료 : 정재완 (2015),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과 원산지관련 행정심판사례의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 13.

나. 원산지 검증결과 분석에 따른 시사점

원산지 검증결과 원산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요건으로 인한 특혜관세 배제(37%)보다 증명서류 요건 불비 등 형식적 요건으로 인한(49%) 것이 더 높다는 것은 특혜관세 적용에 있어 절차적 적용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수출입물품의 검증당국에서 검증대상 물품을 선별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선별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나 위험관리 기법이 동원되는데 실질적 요건의 위반이 의심되어 검증대상으로 선별(28%)하는 것보다 형식적 요건의 위반이 의심의 이유(34%)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세당국에서는 과세요건 배제

로 인한 추가 징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 규정위반의 적발이 용이한 이유도 있겠지만 수출입업체가 절차적 규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부인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서양의 사고는 서류로 인한 계약문화가 발전되어 있어 증명서류의 보관 등이 문화적으로 한국보다는 앞서 있다. 한국에서는 실체적 기준을 중요시 하는 반면에 형식적 절차는 무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수출업체들이 원산지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였거나 소홀한 이유다. 한국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FTA 활용시 어려움을 겪는 원산지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FTA-PASS(수출물품원산지관리시스템)을 무료로 개발하여 개발·보급하고 있으면 약 11,850 개¹¹³⁾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수출업체는 FTA-PASS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업자의 의무로 규정된 각종 원산지증명 서류의 보관에 대한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비특혜원산지의 통관단계 확인 저조

가. 비특혜대상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특혜관세 대상이 아닌 비특혜관세 또는 원산지표시 등의 확인을 위한 원산지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대외무역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확인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그 물품을 선적한 국가의 정부, 원산지 국가 또는 선적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⁴⁾ 구체적으로 여기서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혼동표시 등을

113) 국제원산지정보원 (2015), 「FTA트레이드 리포트」, 2015년 7월 호, p. 14.

11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명령에 관한 권한은 동 시행령 제 91조 제4항에 따라서 세관장에게 위탁되어 있다.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¹¹⁵⁾

둘째,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¹¹⁶⁾

셋째,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 면제대상과 관련하여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우편물(수입신고 대상은 제외),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이 면제된다.¹¹⁷⁾

넷째,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에 대한 사항으로, 관계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해당 자료의 발행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계 자료를 제출한 자는 자료제출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영업상 비밀로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¹¹⁸⁾

그러나 일선 관세관청에서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업무를 살펴보면,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은 미미하다. 원산지표시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만 강화되고 있지 실제 제출된 물품의 원산지가 맞는 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원산지표시 등이 회사의 브랜드를 위한 이익을 목표로 설정된다면 특혜관세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짐으로 비특혜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절차에서 원산지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비특혜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협약 내용 분석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을 보면,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의 부속서 1A(Annex 1A)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서는

11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 제2항.

116)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 제1항.

117)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2조.

118)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 제3-5항.

통일되고 명확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규정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통일과 조화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의하였다. 이 협정의 원산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최혜국대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원산지표시요건 및 모든 차별적인 수량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의 적용과 같은 비특혜적인 무역정책 수단에 사용되고 정부 조달 및 무역통계에 적용된다¹¹⁹⁾

이 협정에서는 원산지규정이 무역정책상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원산지국 판정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 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 수출입 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은 국내상품 여부의 판정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 되며 관련 상품의 제조업자들 간의 제휴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회원국 간에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¹²⁰⁾ 이와 같은 기본적인 원산지 규정이 제시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제도와 관련된 언급은 없다. 아직까지 WTO 통일원산지(harmonized rules of origin) 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세계 각국은 WCO 개정교토협약 부속서의 원산지규정에 근거를 두고 각 국별로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¹²¹⁾는 원산지(Origin)의 제3장 원산지 증명서류의 확인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원산지 증명서류의 확인과 관련된 상호주의 원칙으로 2. 표준(standard)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류의 확인의 요청을 받은 체약당사국의 소관 당국은, 만약 입장이 반대인 경우로 이를 요청한 체약당사국의 소관 당국이 그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면, 동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여 상호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 증명의 검증(verification)과 관련한 설문 결과를 보면 원산지 증명은 그것의 진실성과 유효성이 의심받을 이유가 있을 때 검증되며 또한 무작위로도 행해진다. 45개 회원국(68%)은 그들이 요구하는 세관당국이나 다른 기관으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표시하였고 31개 회원국은 국제적 쌍무 협상에 기초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119) WTO(1994).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Article 1.

120) WTO(1994).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Article 2.

121) 한국은 2003년 2월 19일에 개정교토협약에 가입 동의하였으나 특별부속서의 경우 A.1, A.2, B.1, B.3, C.1, D.1, D.2, E.2, F.3, G.1, J.2, J.3, J.4, J.5만 수용하였으며 특별부속서 K는 수용하지 않았다.

둘째, 원산지 증명서류의 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본 장을 수락한 계약당사국의 관세행정당국은 문서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을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에 의한 경우에 본 장을 수락하고 그 영역내에서 원산지증명서류를 작성한 계약당사국의 소관 당국에 대하여 그러한 증명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무작위추출에 의한 확인 요청은 그러한 요청임이 적시되어야 하며 적절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한다.¹²²⁾

본 장을 수락한 계약당사국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권한 있는 당국은 스스로 필요한 확인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다른 행정당국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후에 회신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¹²³⁾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제공되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 6개월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확인요청은 요청을 하는 계약당사국의 세관관서에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¹²⁴⁾

3. 특혜원산지 규정과의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필요¹²⁵⁾

최근 원산지 표시제도와 FTA 특혜 원산지결정기준 불일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¹²⁶⁾에 있어서 수입 생우가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경우에는 수입

122) Revised Kyoto Convention, Special Annex K, Chapter 3, 3. Recommended Practice, 4. Standard.

123) Revised Kyoto Convention, Special Annex K, Chapter 3, 6. Standard, 7. Standard.

124) Revised Kyoto Convention, Special Annex K, Chapter 3, 8. Standard, 9. Standard.

125) 김영환 (2014), “특혜비특혜 원산지규정의 상관관계와 원산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II),” 「관세와무역」, 제46권 제491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p. 47-50.

126)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시행 2014.5.1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6호] ;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제3호가목·제4호가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과 2항 관련 [별표 7]과 [별표 8] 및 제25조제1항과 2항 관련 [별표 12]과 [별표 1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과 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수입 유통식별번호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기로 보고 수출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¹²⁷⁾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규정한 고시¹²⁸⁾에서도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 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는 살아 있는 가축을 잡아 고기로 만드는 도축(Slaughtering) 공정을 원산지 불인정공정으로 따로 명시하고 있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도 수입 가축을 일정 기간(소 6개월, 돼지 2개월, 기타 가축 1개월) 미만 사육한 경우 도축만으로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와 달리 닭을 제외한 가축의 도축 공정에 대하여 유일하게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미국·멕시코 간에는 생우의 교역이 비교적 활발하여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출생, 사육된 소가 미국에서 도축되어 우리나라로 수출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원산지표시 등에 이중적인 현상이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FTA가 발효되면서 FTA 부속 원산지규정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개념상 혼동, 단속 과정에서의 민원제기, 양자의 통일 요구 등이 나타나고 있다.

<표 4-5> 한·미FTA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표시 기준

적용시점	원산지 규정	출생 : 캐나다 사육 : 캐나다 도축 : 미국	출생 : 캐나다 사육 : 미국(6개월 이상) 도축 : 미국
통 관	FTA 특혜관세	미국산	미국산
유 통	원산지표시	캐나다산	미국산

자료 : 연구자가 분류 작성.

그러나 원산지 표시제도와 FTA 특혜 원산지규정을 일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127)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시행 2014.5.1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6호] 제7조 ④항 "원산지"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고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포함한다)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내에는 한우고기, 젓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고기의 경우 ()내에 수출국을 표시한다. 다만,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도축·생산된 고기의 경우 ()내에 그 생우의 수출국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128)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규정한 고시[시행 2014.10.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91호].

양 제도의 기본 목적, 적용 범위, 시행 방법 등을 생각해 볼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 표시제도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이 중요한 목적이나 FTA 특혜 원산지규정은 관세특혜의 부여 여부 결정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제도가 적용되는 물품은 주로 소비재로 한정되며 특혜 원산지규정은 모든 거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는 양 제도를 일치시킬 수가 없다.

둘째, FTA 특혜 원산지규정은 역내산 물품으로 인정하여 관세특혜를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 연합체를 원산지 국가로 표시하는 것(예를 들면 Made in EU, Made in NAFTA, Made in ASEAN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FTA 특혜 관세 부여 시 일반적으로 역내누적이 인정된다. 세트(예를 들면 개인용 여행세트 등) 구성물품의 원산지가 두 국가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FTA 원산지규정은 통상 부가가치 기준 등을 적용하여 세트 물품 전체에 특혜 관세를 부여할지만을 결정한다.

셋째, FTA 부속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FTA마다 다르며, 원산지 표시제도와 일치하려고 해도 특정한 FTA의 부속 원산지 결정기준과 같게 하는 것은 다른 FTA 부속 원산지결정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 불가하다. 만약 이렇게 되면 표시제도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출국마다 달라 더 큰 혼란이 발생한다.

넷째,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출국이 FTA 체결국인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FTA 체결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더라도 여전히 표시 의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경우 특혜관세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하나 원산지 표시의무는 별도로 존재한다. 또 FTA 체결국의 수출품이더라도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면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상의 몇 가지 이유만 살펴보아도 원산지 표시와 FTA 특혜 부여를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일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여러 FTA가 시행되면서 원산지 표시제도와 개념상 혼동이 발생하여 다소 이해가 어려워지고, 일반적으로 관세인하 등 특혜를 부여하기 위하여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FTA에서 표시제도보다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이 협상 결과로 채택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로 보인다. 원산지 표

시는 FTA 체결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 부과되는 일반적 의무이고, FTA 원산지규정은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판정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채택되는 것이 두 제도의 운영상 조화 측면에서 자연스럽다. 따라서 FTA 원산지규정 협상과정에서도 이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3절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발전방향

1. 원산지표시 방법의 다양성 수용과 규정 정비

원두커피의 원산지표시 쟁송사례 등에서 보았듯이 원산지표시는 특정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와인하면 프랑스, 시계하면 스위스, 전자제품하면 일본처럼, 주로 강력한 국가 브랜드 파워를 지닌 나라의 기업들은 원산지 효과를 많이 보는 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수준이 높아지고, 해외임가공 수입이 보편화됨에 따라 국내와 국외에서의 'Made in Korea'의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자사 제품에 대한 원산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내와 국외로 생산공정을 분할해서 원산지 우회전략을 사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따라서, 동시다발적인 FTA 시대에 원산지 표시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앞서 본 연구자는 원산지표시 쟁송사례에서 원두커피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쟁송사례와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표시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물론 WTO 원산지규정협정에 따른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비특혜 무역제도에 단일한 판정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과의 통일을 이야기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미국도 WTO 통일원산지규정을 여러 비특혜 무역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일본도 소비자 정책 목적을 위한 식품의 라벨링, 동식물 검역 등에 대하여 통일원산지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특혜와 비특혜를 아울러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수출국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자의적인 규제가 될 가능성이 많으나 활용하는 국가에게는 매력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하나의 비특혜 원산지제도를 모든 비특혜 무역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원산지 표시, 무역구제 등 분야별로 정책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다양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소비자의 요구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본래의 정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최

근 관세청에서도 다양한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을 수렴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관세청 고시 개정, 2015.1)을 개정 하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각 물품별 특성에 맞게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규정의 정비와 표시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및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나 자동차의 엔진·트랜스미션 생산국을 표시하도록 하는 미국의 Automobile Labeling Act 등 주요 소비재에 대한 표시제도, ‘Made in USA’ 인정기준 등을 고려하면 공산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표시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별도로 지정된 공산품은 최종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별도로 핵심부품이나 주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안전·품질표시 기준과 「대외무역법령」을 조화시키며 내국물품 표시제도를 더 발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핵심부품이나 주요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을 준용하여 원산지판정기준, 표시방법을 정하면서 주요 부품(해당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높은 상위 2개 부품), 핵심부품(해당 제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지정 공고한 것)의 원산지를 완제품의 원산지와 함께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591호, 2013.2.21.)은 그 다양성의 측면에서 발전된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여러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3장의2를 비롯해 원산지제도에 관한 장으로 전면 개정하거나 비특혜 원산지제도에 관하여 별도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과 일치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의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은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에 기본적으로 천명하고 있을 뿐,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섬유 및 의류 제품이 한·미 FTA의 까다로운 원산지결정기준인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미국의 MFN 세율이 적용된다라도 미국 관세법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만약 미국 관세청이 우리나라의 의류 수출품에 ‘Made in Korea’로 표시된 것은 불법이며 ‘Made in China’로 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리나라 관련 행정당국인 세관(수출입통관)과 상공회의소(원산지증명)는 관련 자료를 통해

해당 의류 수출품 생산과정상 국내에서 이루어진 공정이 미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수출국의 비특혜 원산지규정에 대하여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적어도 주요 국가, 규정이 명확하고 벌칙이 강력한 비특혜 원산지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통관시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원산지 판정의 기초자료를 보관하는 의무의 규정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2.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및 관련 규정 정비

제2장에서 원산지 관련 법령에서 살펴 보았 듯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은 중복적으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세법은 대부분 수입물품의 관세 징수나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FTA의 증가와 더불어 수출물품의 원산지발급기관으로 세관의 업무가 증가하면서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원산지관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원산지발급 절차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FTA로 인해 수출입업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산지 제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대외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서도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 절차를 한 개의 법령이나 고시에 일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원산지 발급주체는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각각 운영하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은 한 개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준용규정을 사용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 일반원산지증명서(비특혜)는 전국 69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특혜) 및 FTA 원산지증명서는 전국 69개 상공회의소, 47개 세관, 2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발급하고 있다. 세관이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는 극히 일부(FTA, APTA)로 대부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에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에 대한 벌칙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원산지증명서의 허위, 변조 등 원산지증명서의 부정발급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할 좋은 기회가 생겼으나 국내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물품으로 인해 국내의 선량한 제조업체가 피해

를 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과 관련하여 원산지증명 신청 및 발급절차를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이 신청자가 허위로 작성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실질적으로 허위 여부를 실사하거나 검증하는 등의 실질적인 검증과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담당 직원 및 업체 실무자의 인터뷰 결과 등을 토대로 몇 가지 발전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확인을 위한 제조업자 정보 구축이다. 즉, 한국을 원산지로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제조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조업자 정보망 구축을 통해 성실하게 신고되었던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주고 정보망에 없는 신규 제조업자나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추가적인 서류 등을 요청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증명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원산지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의 도입이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허위신고나 신고내용의 위·변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현장검증이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현장 검증 기능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규정에서 “원산지 판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자료의 보관의무 등을 특혜원산지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특정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표시를 주장하는 무역업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의무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행정당국에서 무역구제 등의 활동에서 불공정한 무역행태를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FTA 관세특례법상 특혜관세 적용의 요건과 같이 일정기간 기록유지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 4-6> FTA 특례법령상 서류보관 의무 등

협정국	기록유지 규정
칠레	신고서의 서명일자로부터 5년간 또는 당사국이 명시하는 장기간 동안 자국 영역에 보관하도록 규정
싱가포르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가 또는 자국이 명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국 영역 안에서 보관
EFTA	최장 5년 동안 보관
ASEAN	수출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
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
EU	원산지신고서 사본과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
페루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
미국	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
터키	원산지신고서 사본과 증빙자료 5년간 보관
콜롬비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5년 동안 또는 수출 당사국이 명시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자국의 영역에서 유지 보관

자료 : 연구자가 분류 작성.

3. 비특혜관세 대상물품 원산지 증명 및 확인 강화

수입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 관세 등을 부과할 때,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과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다. 이는 관세법 제232조에도 비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규정이 있지만 미제출시 편익관세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비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원산지 증명절차와 확인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의 책임과 의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덤핑방기관세¹²⁹⁾ 부과와 관련한 논쟁¹³⁰⁾을 통해 비특혜관세

129) WTO는 한 나라가 일반적으로 외국 수출자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불공정무역의 시정을 요구하는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수량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WTO 반덤핑협정이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등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로는 크게 덤핑방기관세제도(Anti-Dumping

의 원산지증명과 집행에 대한 일면을 볼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준의 하나인 ‘덤핑가격’은 덤핑 여부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수입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임으로 공급국 내 생산자가 얼마나 저가로 수출하였는지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은 생산자별로 다르게 부과된다. 그럼으로 원산지 증명이라는 개념보다는 동일한 수출국내에서 누가 생산한 것인가 하는 증명과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는 중국 생산자에 따라 최소 9.07%에서 최대 37.40%까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상공회의소 성격)가 발행하는 생산자증명서¹³¹⁾를 근거로 중국 생산자를 확인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논란이 되었던 수입업체들은 생산자증명서가 해외에서 발행돼 그 진위 여부를 국내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해외 수출자와 공모한 후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이다. 그러나 세관조사가 종료된 후 실무적으로 한 가지 쟁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생산자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되었으나 실제 중국 생산자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기타의 공급자’로 처리하여 16.07%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최고세율인 29.41%(2014년 시행되는 기획재정부령 적용)를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통해 생산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그 밖의 공급자’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밖의 공급자’라 함은 중국의 수많은 생산자를 모두 열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그 밖의 공급자’로 일괄하여 표현하였을 뿐이며 생산자 미상까지 수용하는 Basket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Duty System, AD)와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및 세이프가드(Safe-Guard, SG)가 있다. 이 중 덤핑방지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잠정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130)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2014관0418, 2015.6.3.).

131) 생산자증명서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생산자가 제출한 포장명세서(생산자의 인감 날인)를 근거로 발급한다. 생산자증명서 제출 제도는 2006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동 원산지증명서도 생산자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2012년 관세청에서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원산지증명서상의 생산자는 입증효력이 없으며, 2012.11.1.부터 ‘생산자증명서’를 징구 받도록 시도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첫째 납세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의 진실성(Authenticity)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선의에만 맡게 놓을 경우 탈세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의성실을 검증할 수 있는 2차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검증수단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를 통해 직접 중국 수출자에게 검증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세관장이 관세청을 통해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생산자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요청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혜원산지 규정에는 당연히 되어 있는 생산 및 과세자료 보관 및 제출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물품에 비해 비특혜 관세가 부과되지만 그 중에서도 낮은 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권리주장 등을 위해 기본적인 자료보관 및 제출에 대한 의무규정을 WTO통일원산지 규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4. FTA의 절차규정 표준화로 해석에 따른 갈등 해소

한국 관세당국에 의한 원산지검증은 2000년 이전에도 일반적인 납세에 대한 심사의 일부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차별적인 관세율 적용이 미미하였던 관계로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FTA의 급증으로 원산지검증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해마다 그 대상과 검증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FTA 원산지 검증과정 및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협정당사국 또는 수입자와 각 관세당국 간의 갈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FTA 원산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추상적이어서 발생하는 혼란이다. 검증단계에서 수입국 당국에 수출국 당국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충분한 정보’에 대한 범주가 어떤 것인지 또는 협정에 명기된 ‘예외적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게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원산지 신고서에 해당 물품을 ‘자세하고 충분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요건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품을 설명해야 하는지 등이 많은 해석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 협정당사국간에 검사결과 회신기간에 대한 법적 한계도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협약에 따라 수출국의 조

사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수입국의 입장에서조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수입 국내에서 법원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품목분류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수입국 관할당국과 수입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수입국 법령에 따라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간접검증 방식에서는 각 협정당사국의 사법권과 관련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의 권한배분에 대한 해석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협정상의 절차적 규정 등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 하고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위한 협정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상호 검증을 위해서는 검증과정을 총괄하는 절차적 규정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고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WCO 등 국제기구에서는 각종 FTA에서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상호 검증절차 등에 대한 통일 및 표준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원산지 제도를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실현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행정절차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는 물품이 어느 국가의 물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출입통관의 현장에서 증명과 확인과정으로 실현되는 것에 대하여 효율성과 비용 및 위험관리 방안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다. 행정적 측면에서 원산지 제도를 크게 ‘원산지 결정’ ‘원산지 확인’ ‘원산지 표시’로 나누고 ‘원산지확인’ 과정을 ‘원산지 증명’과 ‘원산지 검증’으로 구분하여 모색해 보았다. 수출입업자 등이 결정한 원산지를 세관관서에 증명하고 세관관서는 이를 확인하여 최종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과 통관 후 개별 국가의 정책목적에 따라 이를 표시하고 유통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원산지제도의 개념과 기능을 찾아보고 원산지 규정의 내용과 분류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절차적 규정의 실체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원산지 제도의 국제법규나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원산지제도 관련된 관세법, 대외무역법, FTA 관세특례법 등 국내 법체계를 통해 절차적 규정의 법원(法源)을 고찰하고 연구에 필요한 용어 등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제3절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규정, 원산지 검증절차 규정, 원산지 표시 및 확인 절차 규정 등으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내용과 방법 그리고 주요국의 현황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적용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제1절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현황을 특혜관세 적용대상별, 주요 국가의 원산지 증명, 비특혜원산지 증명의 국제적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관세학회에 게재된 연구 논문¹³²⁾의 통계(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제공)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증명서의 발행과 각 국의 운영현황 및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현

132) 송선옥 (2015),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p. 83-101.

황을 분석하고 협정별 원산지검증의 특성을 파악하여 수출입업체의 대응방안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주요 국가의 원산지표시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적발 실적 등을 근거로 한국의 원산지 표시 현황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 및 심사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고찰한 원산지 제도의 법원과 절차적 규정의 적용 현황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쟁송사례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주요 내용은, 먼저 원산지표시의 다양성 수용 방안,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규정 정비와 개선방안, 비특혜관세 대상 물품 원산지 증명 및 확인 강화 방안, FTA의 절차규정 표준화로 해석에 따른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 제5장은 결론으로서 논문에서 전술한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규정된 원산지 관련 규정이 행정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적용되고 각 국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의 정비, 통일은 물론 절차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와 발전과제

본 논문은 최근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더불어 원산지결정기준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적 관심을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 분산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특혜와 비특혜를 동시에 절차적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상호간 간접비교 및 관계 설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여 특혜관세나 비특혜관세의 지위를 부여하는 통관과정, 즉 원산지 증명과 원산지 검증에 대한 이해와 원산지 표시라는 최종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여긴다. 그리고 특혜원산지 국가와 원산지 표시 국명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각 제도와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도 기여했으리라 본다.

물론 관련 법 조항과 규정의 검토 등 협소한 분량의 자료만을 가지고 원산지 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수출입통계나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관련 지식과 자료를 더욱 확보하여 조사해야 함에도 관세관련 학술지 등 위주로 연구되어 주관적 의견의 나열로 치부될 우려가 있는 본 논문의 한계를 인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절차규정 뿐 아니라 외국의 원산지 관련 절차적 규정의 자료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 등을 활용한 발전된 연구로 FTA는 물론 각종 비특혜원산지 규정 등의 통일과 국제통상 확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의기 (2013), 「한미FTA 원산지 규정 해설」, 다른 세상.
 성윤갑 (2007), 「FTA 원산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정인교 (2010), 「FTA 통상론」, 울곡출판사.
 채형복 (2001), 「국제원산지제도」, 높이깊이.

<학술논문>

- 국제원산지정보원 (2015), 「FTA트레이드 리포트」, 2015년 7월 호.
 권태휴 (2013), “원산지증명제도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영환 (2014), “특혜·비특혜 원산지규정의 상관관계와 원산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Ⅱ),” 「관세와무역」, 제46권 제491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남풍우 (2010),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1), 「원산지규정의 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한국무역협회.
 박홍규 (2014),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송선욱 (2015),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양영미 (2014), “특혜원산지규정의 해석과 적용-WTO와 FTA하의 조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이경열 (2015),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원,”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이춘삼 (1996),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통일화 과정,” 「중재학회지」, 제6권, 한국중재학회.
- 정인교 (2010), 「FTA 통상론」, 을곡출판사.
- 정재완 (2010),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의 유통방지 대책연구,” 용역연구보고서,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재완 (2015),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과 원산지관련 행정심판사례의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 조성제 (2007), “WTO 통일원산지규정 협상동향과 대응방안,” 「창업정보학회지」, 제1권 제1호, 한국창업정보학회.

<참고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 <http://www.customs.go.kr/portalIndex.html> (관세청 FTA 포털)
- <http://okfta.kita.net/> (FTA무역종합지원센터)